

새 예술정책 (2018~2022)



2018. 05. 16



문화체육관광부

새예술정책수립특별전담팀

추진 경과

□ 새 정부 문화비전과 연계한 새 예술정책 수립 추진

- 새 정부 문화비전(' 17.12.7. 기본방향 발표)의 철학을 담은 문재인정부 새예술정책 5개년 계획(' 18~' 22) 수립 필요

□ 세부 추진경과

○ 새 정부 출범 이후 분야별·장르별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 *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2회), 예술지원(9회), 예술인복지(4회), 공연예술(7회), 시각예술(64회), 문학(5회), 문화예술교육(4회) 등 총 105회
- 장관 참석 :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 시각예술 분야 간담회

○ 분야별·장르별 지역 순회 토론회 개최

- * 예술인복지(3회), 공연예술(4회), 문화예술교육(20회), 시각예술(13회) 및 문화청책포럼(4회) 등 지역의견수렴 총 44회

○ 새예술정책 수립을 위한 예술정책 미래비전과 전략 연구 추진

- * 연구기간 : '17.5.18~10.17 / 주관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민관협치 구현을 위한 새예술정책 수립 특별전담팀(TF) 구성·운영

- * 기간 : '17.10.26~'18.4.30

구성 : 10개 분과 53명(예술계·학계 등 35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체부 협업)

- ** 분과활동 : △총괄(17회), △예술지원체계(12회), △예술표현의자유 법제화(9회), △예술인복지(13회), △공연예술(12회), △예술시장지원(6회), △장애인예술(8회), △시각예술(미술진흥 중장기계획 특별전담팀 대체), △문화예술교육(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대체), △문학(문학진흥정책위원회 대체)

○ 분야별·장르별 중장기계획 발표

- * 공예('17.12.7), 문학('17.12.19), 문화예술교육('18.1.11), 미술('18.4.2), 공공디자인('18.5.2)

||| 목 차 |||

I. 계획 배경	1
II. 예술정책 환경 분석	3
III.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9
IV. 8대 핵심과제	11
1.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인권 보호	11
2.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16
3. 예술 가치 중심의 창작 지원	22
4.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복지	32
5. 모두에 열려 있는 예술 참여 환경 조성	39
6.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	47
7.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 환경 조성	51
8. 예술의 미래 가치 확장	60
V. 향후계획	65
VI. 추진일정	66

I. 계획 배경

□ 신뢰회복과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예술인과 국민

- 블랙리스트 사태로 촉발된 예술행정에 대한 신뢰 붕괴 및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는 예술행정의 혁신과 예술인의 권리 강화를 요구
- 문화예술계 미투(나도 피해자) 운동, 불공정행위의 만연 및 열악한 창작여건은 예술인의 인권이 보장받고 안정적 환경에서 활동하기를 기대
 - * 미투 운동은 폐쇄적인 도제식 시스템이 지배적인 예술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냄

□ 예술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조명

- 예술은 미적 체험, 즐거움, 삶의 질 제고 등 심미적·정서적 가치를 지님
- 또한 창의성과 혁신 유발 및 공감과 소통 능력 향상 등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의 창조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
- 최근 성장 동력 약화, 고용문제, 도시와 지역의 쇠퇴, 갈등과 범죄 등에 대한 대안적 해법으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재조명됨
- 예술의 창의력·감성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소외 우려 및 일자리 위기의 대안으로 주목
 - * 국내 400여개 주요직업 조사 결과, 인공지능 등 자동화에 따른 직무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 상위 10개 중 9개가 문화예술 분야(한국고용정보원 2016)
- 예술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타 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 창출
 - * (취업유발계수) 전 산업 13.9/ 공연예술 22.9 및 시각예술 18.4

□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한 새예술정책 수립

-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등 국정 원리와 연계
-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정책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 가치 구현 및 ▲예술의 공공성 가치와 특수성을 반영

◇ 우리 삶과 함께하는 예술은 **개인적**(즐거움과 안정), **사회적**(결속과 창의성·혁신), **국가적**(자부심) 가치를 지니므로, **예술 및 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권리 보장 필요**

* 헌법 제22조 제2항 :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

□ 예술의 가치

개인적 차원(individual)	공동체 차원(community)	국가적 차원(national)
· 미적 체험 · 즐거움, 심리적 만족과 안정 · 자기표현 및 의사소통 역량 강화 · 건강과 삶의 의욕 향상 · 사물, 세상에 대한 이해와 성찰 · 인지력/문해력/상상력 향상 · 자아존중 · 자기정체성	· 소통과 공유 확산 · 사회적 자본 축적 · 사회 결속력 강화와 공동체 정체성 확보 · 갈등 및 범죄의 감소 · 창의성 및 혁신 유발 · 생산성 증대 · 고용 창출 · 부가가치 및 관광객 창출	· 문화적 시민 육성 · 국제적 평판 / 국가브랜드 · 국가적 자부심

* 영국문화스포츠미디어부(DCMS/2010) ,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양혜원/2012)

□ 문화예술의 7가지 효과 (영국예술위원회 최고경영자 대런헨리, 2016)

창의성	문화예술의 핵심가치이며, 우리 삶을 변화시킴
예술교육	유년기 문화예술교육은 인생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
삶의 질	인간의 건강과 삶의 안녕에 긍정적 영향을 줌
혁신성	기술과 결합, 문화예술도 변화하며 대중의 예술 접촉경로도 확장됨
지역형성	지역 예술가·단체는 고유의 정체성을 구축하며, 도시재생과 사회경제적 혜택을 가져옴
경제가치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성장 등 효과
위상제고	국가의 명성은 문화에 기반하며, 창조적이고 경제적 성공을 거둔 많은 도시의 배경에는 문화적 기반과 예술적 결과물이 언급됨

※ 참고 : 문화예술의 가치와 효과 주요 연구·통계

① 미국 ('17, NEA(국립예술진흥기금)·AFTA(전미예술연합회) 보고서)

- (영리+비영리) 경제에 7,296억달러(약786조원) 규모 기여, GDP의 4.2%(교통·관광보다 큼)
- (비영리) '15년 기준 총 1,663억 달러의 경제활동, 460만개의 정규직 일자리 및 주·지방·연방 정부 문화예술 예산 배정액의 5.5배 정부수익 창출(총 275억달러)
- * 또한 미국인들은 문화예술이 삶의 질 제고(63%), 지역사회 문제 개선(73%) 등에 기여한다고 생각

② 영국 ('15, '16, DCMS(문화스포츠미디어부) 통계)

- (일자리) '11~'15년 창조산업 일자리 19.5% 증가, 그 중 음악·공연·시각예술은 34.7% 증가
- (부가가치) '08~'14년 총 경제 2.8% 증가, 창조산업 5.4%, 그 중 음악·공연·시각예술은 6.5% 증가

Ⅱ. 예술정책 환경 분석

1 시대 환경의 변화

□ [의식변화] 블랙리스트, 미투 → 비민주적/비인권적 제도와 관행 척결

-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한 예술가 및 국민의 권리 침해*, 미투운동으로 밝혀진 예술계의 구조적 성폭력·위계폭력이 사회적 화두가 됨

*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함으로써 예술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 권리를 침해

- 그 저변에는 국가의 권위주의와 비민주적 통제, 예술계 내 위계구조 등으로 대변되는 비민주적, 비인권적 관행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 존재

□ [생활양식] 삶의 질, 소소한 행복을 중시 → 예술 참여 기회 확대

-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현재 삶에 가치를 두는 생활양식의 변화로 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 욕구 증대

* 율로(YOLO ; You Only Live Once)', 일과 삶의 균형, '워리밸'(Work-and-life Balance), 일상의 소소함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소소(SOSO)'열풍 등

- 자신만의 문화생활을 위한 자발적 1인 가구와 '나홀로족' 증가

* 청년 1인 가구 연 문화예술행사 관람 25회 vs. 다인가구 20회(서울시민문화향유실태조사 2016)

-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제품개발·판매 등에 개입하는 소비자* 등 예술 취미활동이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사례 증가

* 창조적 소비자 '크리슈머(Creator+Consumer)', 문화생활의 경험을 통해 얻은 문화적 만족감을 전파하는 아트슈머(Art+Consumer), 컬처슈머(Culture+Consumer) 등

□ [사회문화] 저출산·초고령화·갈등 → 소통·다양성·치유·화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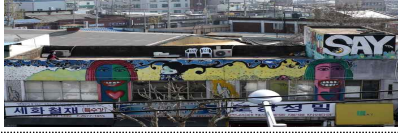
- 생산인구의 감소(인구오너스 시대)로 사회적 부양·통합 부담 급증
 - 저출산('16년 합계출산율 1.17명),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현실화
 - * 65세 이상 인구비율(통계청) : '16년 13.2% → '26년 20% 이상 → '60년 41%
 - 포기하는 청년층(N포 세대*), 계층·세대·성별(여혐, 남혐) 간 갈등 심화
 - * 사회·경제적 압박에 따라 연애, 결혼, 주택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
 - 세대 간 소통, 중장년층·고령자 인생이모작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필요
- 1인 가구('15년 27.2%) 및 다문화 시대 등 사회구성의 변화 가속
 - 심리적 단절감 등을 '사회적 가족'으로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체 구성 및 문화다양성을 위한 예술정책 필요

□ [정치경제] 촛불혁명, 남북 긴장완화, 실업 → 협치와 분권·남북예술 교류·일자리 창출 필요

- 촛불혁명과 새 정부의 출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요구
 - 권력 다극화 및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로 신직접민주주의 강화 흐름
 - * 도시·지역네트워크 권한 확대, 정부-국민 소통 및 주민 참여 확대
 - ** 예술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 욕구도 확대
- 지방소멸 위기로 지역분권을 통한 자생력 제고 요구 급증
 - 도시쇠퇴, 젠트리피케이션** 및 문화백화 현상***의 방지를 위한 문화적 도시재생 전략도 함께 모색 필요
 - * 도시화 비율(인구 도시거주 비율) : '60년대 39.1% → '90년대 75% → '16년 91.8%
 - ** 상권 활성화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 기존에 머물던 소상공인이 떠나는 현상
 - *** 개성 있던 동네가 좋아서 찾았던 사람들이 개성이 사라지면서 떠나는 현상
-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4.27 남북정상회담 계기 남북 평화분위기로 문화예술교류 역할 부각
 - * 북한예술단 강릉·서울공연('18.2월), 남북예술단 평양 합동공연(4월) 등

- 저성장 고착화로 성장 동력 약화 및 실업, 청년층 어려움 가중
 - * '18.3월 기준, 실업률 4.5%, 청년실업률 11.6%로 17년 만에 사상 최고치
- 혁신주도형 경제성장모델 발굴 및 적극적인 스타트업(새싹기업) 지원, 대안경제로서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 대두
 - * 생산품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협력소비 방식/ '25년 시장규모 3,350억달러 전망(PwC)
- 예술분야도 타 산업과의 혁신적 융복합,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 및 공유가치에 기반 한 사업모델 창출 지원 필요

《 도시재생, 예술과 타 산업 융합 사례 》

폐산업시설 재생	기존 산업과 공존	신산업 확장
		
(영국 테트 모던) 발전소를 리모델링 문화산업 발전 및 지역일자리 창출	(문래 창작촌) 철공업과 예술가 협력으로 디자인 상품 개발	(중국 야창) 인쇄업과 예술의 융합, 인쇄예술, 예술정보 영역 등 개척

□ [미래기술] 4차산업혁명 → 융합, 인간감성, 창의성의 예술 중요

-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산업 및 생활양식의 새로운 지평 확산
 - 예술과 기술이 융합되어 예술의 상상력이 확대됨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범용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산업 발전
 - 만물인터넷(IOE) 시대의 도래로 인한 스마트 홈·시티 등 물리적 공간의 변화
 - 3D프린터 등을 활용한 DIY(Do-It-Yourself) 제조업 실현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 발전으로 시각적 체험과 경험의 패러다임 변화
-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점*이 예상되어, 인간소의 우려 및 인간의 존재론과 인식론,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 기술적 특이점(technological singularity) : 스티븐호킹은 100여년 안에, 레이 커즈와일은 '45년경 예상
- 예술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인간 고유의 존재가치와 정체성 논란에 대한 대응 필요
- 초연결사회·초개인화된 취향 만족을 위한 다양한 생산소비형태 등장
 - 만물인터넷(IOE)을 통한 스마트 장소성의 확산 등으로 초개인화된 향유방식 확산 및 온디맨드경제*·DIY경제 등 발달 예상
 - * 수요자가 요구하는 대로 서비스, 물품 등을 온라인 또는 모바일네트워크를 통해 제공

2 예술 분야별 현황

□ [창작여건] 열악하고 불안정 → 맞춤형 창작·복지정책 필요

- (생활) 예술활동 평균수입은 연 1,255만원, 36.1%는 수입 없음
 - 겸업비율은 50%이며, 80% 이상이 낮고 불규칙한 소득 때문에 겸업
 - 예술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수준에 예술인 79.6%가 불만족

<분야별 지난 1년간 예술 활동 평균수입(예술인 실태조사 2015)>

분야	전체	예술	미술	문학	공예	사진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수입(만원)	3,936	1,255	614	214	1,175	817	1,337	861	1,285	1,876	3,957	2,002

- (고용) 창작과정의 특성상 정규 고용이 아닌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단속적 예술 활동이 대부분(전업예술인 72.5%가 프리랜서)
 - 서면·구두계약체결 경험 30.7%, 산재보험 가입률 26%, 고용보험 25.1%, 실업급여 수혜 경험 7.2%로 불공정하고 사회보장에도 취약
 - 전공자는 많으나, 예술계 영세성, 발표·활동기회 부족, 다양한 직무능력 요구하는 현장과의 불일치 등으로 진입·안착에 애로
 - * '16 대학 졸업생 취업률 49.6% 대비 시각 37.6%, 공연 18.7%('17교육통계연보)
 - ** '16년 공연단체의 34.7% 및 화랑의 52%가 연 매출 5천만원 미만
- 예술인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 지급, 지속적 예술활동 기회 제공, 예술분야 직업 세분화 및 창작 지원 등 필요
- (창작 공간) 개인 창작공간 보유 비율은 54.3%로 예술인들은 경제·법제도·행정지원 외 작품활동공간/시설 지원 희망(예술인실태조사 2015)
 - 2,364개 공연예술단체 중 상주단체 비율은 6%에 불과(공연예술실태조사 2017)
 - 예술인은 대관료 상승, 대중과 교류할 수 있는 발표기회 부족 지적
 -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대관료는 '12년 대비 '15년 16.5% 상승(평균물가상승률의 약10배 이상)
 - ** 대중음악 발표는 연 평균 20회 이상이나, 문학 8.4회, 미술 6.4회, 연극 6회 등('14)
- (정부지원) 안정적 지원을 위해 문예기금의 불안정한 재원 유입구조 및 창작 예산비중의 축소 문제('05년 43.7%→'17년 21%) 해소 필요

□ [향유환경] 지역편차 및 양적 지원 → 지역중심·국민수요 맞춤형 지원

○ (공연·전시) 시설과 공연·전시 접근 기회 면에서 지역편중

- 인구 백만명 당 지역별 공연장 수 최대 5.5배, 공연 횟수 4.6배, 미술관 수는 23.4배, 전시 횟수 5.3배 차이*

* ▲공연장(세종 10, 제주 55개) ▲공연(경기 199, 제주 915회) ▲미술관(인천 1.37, 제주 32.09개)
▲전시(경기109, 서울 574회) <2017 문화기반시설총람/ 공연예술실태조사/ 문예연감>

○ (관람·참여) 여가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으로, 향유·참여활동 증가

* 순수예술행사 관람률 '08년 23.5% → '16년 34.4/ 문화 동호회 참여경험률 '08년 2.9% → '16년 5.5%/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08년 8.6%% → '16년 10.6%

** 국민이 하고 싶은 여가 활동도 1위 관광(71.5%), 2위 문화예술관람·참여 (48.1%), 3위 취미, 자기개발(46.4%)으로 모두 예술과 직간접적 관련성 높음

- 그러나, 의향에 비해 실제 관람률은 낮은 편이며, 10년간('08~'16) 예술행사 관람률은 소폭 상승한 반면 영화·대중음악은 크게 증가

<예술행사 관람의향 및 관람률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학 행사	미술 전시	서양 음악	전통 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대중음악/ 연예	영화
'08	관람의향	7.3%	14.4%	14.1%	14%	37%		2.8%	43	74.9%
	관람률	4.0%	8.4%	4.9%	4.4%	11.0%		0.9%	8.2%	61.5%
'16	관람의향	6.9%	16.1%	6.7%	10.8%	20.1%	19.7%	3.2%	23.5%	78.5%
	관람률	5.8%	12.8%	4.5%	7.6%	13%	10.2%	1.3%	14.6%	73.3%

- 지역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격차도 여전

* 대도시 70.6% vs. 군지역 48.9%('08) → 대도시 81.2% vs. 읍면지역 65.7%('16)

○ (교육) 지원예산 및 수혜자 등 양적 측면에서는 팽창했으나, 공급자·중앙주도적 정책의 문제, 질적 관리 부족 등 한계도 노출

□ [시장환경] 협소·불공정 → 투자 및 예술영역의 확대, 공정 환경 조성

○ (규모) 공연은 성장정체, 미술은 완만한 성장세이나 '12년 수준 하회

<최근 5개년 예술시장 규모(공연예술·미술시장 실태조사/ 단위 : 억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공연예술시장	7,130	-	7,593	7,815	7,480
미술시장	4,405	3,249	3,496	3,903	3,964

※ 선진국에 비해 GDP 대비 규모가 작아, 수요부족과 성장가능성을 모두 시사

	시장규모	GDP 대비 시장규모
공연예술시장	영국·프랑스(7.7~8.1조)의 약 9%	영국 0.32%, 프랑스 0.29%이나, 한국은 0.04%
미술시장	전 세계(65.7조)의 0.6%	미국·영국·프랑스는 평균 0.1%이나 한국은 0.02%

* 공연예술 영국('14), 프랑스('10), 한국('16) 기준/ 미술 해외 시장규모('15)

- 도시재생, 예술-기술 융·복합,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는 문화 (메이커스 운동) 등 예술 수요 증가로 성장가능성은 높음

○ (불공정) 서면계약 미체결, 열정페이 등 불공정관행, 미술 분야의 높은 시장집중도, 투자·수요부족 인한 예술단체 영세성 해소 필요

- 기업 등 민간의 문화예술분야 후원도 부족(예술단체 수입 중 기부금은 한국 2.9%('16)이나 영국은 12%('15)/ 전문예술법인단체백서, ACE annual report)

* 화랑 상위 3개사가 52.6%, 경매 상위 2개사가 81.8%의 시장점유율

** '16년 기업의 문화예술분야 기부는 2,025억원(총 497개기업 1,463건 기부)

□ [정책체계] 공공성 강화 및 예술계에 맞는 평가기준 설계 필요

○ (예산) 산업화된 콘텐츠 분야 지원과 비교 시 기초예술 지원 확대 필요

- '14년 대비 '18년 증가율 예술 25.9%, 콘텐츠 34.5%

< 예술 분야별 예산추이(단위 : 백만원) >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술 분야 합계	467,461	517,219	600,480	568,535	588,993
(창작 지원 비중)	190,876(40.8%)	183,899 (35.6%)	181,794 (30.3%)	175,464 (30.9%)	192,899 (32.8%)
콘텐츠 분야 합계	344,646	411,824	497,442	478,673	463,513

○ (공공기관) 국가의 집중육성에 따른 책임성 및 민간과의 협력·상생 등 국공립예술단체/기관 등의 미션, 역할 재정립 필요성 제기

* 공공이 직접사업에 주력하면서 민간의 축소 유발, 기관 간 역할·기능의 유사중복 등

○ (평가) 지원사업 평가가 양적 성과 점검에 치중하거나, 예술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예술인·단체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한계라는 지적

* 정부 경영평가 등 성과지표에 대한 불만 및 공연축제 등 사업 평가개선 요구

Ⅲ.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 기본 방향

《 인간의 감성과 가치가 중요한 시대, '사람과 삶 중심'으로 예술정책 재정립 》

◇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의 3대 가치인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예술 분야의 특성과 가치에 맞게 구현

- * (자율성) 예술인 저작권과 개인의 문화적 권리보호 · 증진, 예술지원기관의 독립성 (다양성) 다양한 예술문화가 공존하는 사회,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다양성 증진 (창의성) 예술을 통한 창의성 확산으로 경제 · 사회 혁신 및 새로운 가치를 선도

◇ 예술의 특성·가치와 한국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설계

① 블랙리스트 재방방지를 위해 예술지원체계를 혁신하여 예술 현장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명 변경,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대상 기관에서 제외, 호선제 도입, 연차보고서 발간, 심의제도 혁신, 사무처 직위 개방, 소위원회 활성화, 참여형 사업 운영 등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방형 직위 도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가칭)정책 기획팀 신설,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

② 예술의 자유, 인권 등 예술참여 주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

- * (창작) 예술 표현의 자유 및 직업으로서의 권리 보장, 사회보장 등 복지기반 구축 (향유) 일상 속 차별 없는 예술참여 · 향유를 통한 국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 (매개) 직업으로서 안정화할 수 있는 지원 마련

③ 지역 분권 및 수평적 협치체계로 전환

- * 중앙-지역 역할 재정립 및 협력,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구축,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공공성 구현, 예술정책에의 참여 기회 확대 등

④ 예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 및 미래지향적 예술생태계 구축

- * 지속적 예술 활동과 질적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공정상생의 환경 조성, 기술진화, 지역재생, 예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대응 및 예술교류 확대 등

2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목표

- 예술지원체계에서의 자율성·독립성 강화
- 예술 창작·향유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
-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예술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삶의 질 제고와 사회혁신에 기여

방향

자율과 독립

예술 가치 존중

분권과 협치

추진전략

핵심과제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혁신

1.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인권 보호
2.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예술 가치
존중의
창작환경 조성

3. 예술 가치 중심의 창작 지원
4.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복지

함께 누리는
예술참여 확대

5. 모두에 열려 있는 예술 참여 환경 조성
6.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

예술의
지속가능성
확대

7.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 환경 조성
8. 예술의 미래 가치 확장

법·제도 개선 및 민관협치 확대

IV. 8대 핵심과제

1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인권 보호

가 예술표현의 자유 및 예술가 권리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제도개선]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확보

- (개요)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 및 예술가의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해 (가칭)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특히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을 통해 예술 창작의 다양성 확보
 - * 국정과제 68-1 : 예술인의 정신적·경제적·사회적 지위 보장
- (내용) 국가의 책무로서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및 침해 금지(정치적 검열·통제·개입 등), 위반 시 징계·처벌 및 피해구제 등 규정

《 법률(안) 예시 》

- ▲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 ▲예술지원에 대한 국가의 간섭 금지, ▲예술지원에서의 차별 및 공정성 침해 금지, ▲ 예술검열 및 예술지원의 수단화 금지, ▲예술지원심사의 내용 및 결과의 조작 금지, ▲ 예술지원의 포기 강요 금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 보장, ▲예술가조합 활동 방해 금지 등

- (일정) 예술계·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법안 마련('18년, 국회·정부 협업) → 법 시행('19) 및 국공립 예술지원기관 등의 예술표현의 자유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자체 규정·윤리강령 등 지침 마련('19.하~)

□ [전담기구신설] 예술가권리보장을 위한 기구 설치

- (개요) 예술표현의 자유 및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 권리 침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조직인 (가칭)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 조사를 위한 (가칭)예술보호관 및 신고센터 신설
- (역할) (가칭)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예술가 권리침해행위 조사, 시정권고 및 분쟁조정(안), 권리 침해 관련 정책 등을 심의·의결
- (구성) ▲ (위원회) 권리보호 분야, 예술가/단체, 예술·법률 전문가 등 ▲ (예술보호관) 문체부 내 개방형직위 신설
- (일정) 법 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 19년~)

□ [처벌강화] 예술표현의 자유 등 침해행위 징계·처벌 및 피해자 보호

- (목적) 엄중한 징계·처벌을 통해 예술표현의 자유 등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실질적 구제를 강구
- (파악·조사) 신고센터(권리침해행위 신고·접수)를 통한 피해사실 파악 및 예술보호관을 통해 권리침해행위* 조사 추진

*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지원에서의 차별·공정성 침해 등

- (구제·시정조치) ▲관계기관에 행정·징계처분 요청, ▲시정권고, ▲시정명령, ▲재정지원의 중단·배제 ▲벌칙(징역·벌금형) 등

□ [지위보장] 예술의 사회적 가치 및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 (목적) 예술의 본원적 가치가 갖는 사회적 중요성에 의거,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 보장 및 노동·직업에 관한 권리 보호
 - (내용) (가칭)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과 연계, 지원기관의 책무 명시, 예술가 권리 증진사업 및 조합 등 노동권 보장 추진
 - (지원기관의 책무) ▲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을 것 ▲ 심사의 공정성·투명성·타당성 등 확보 ▲ 예술권리영향평가 수행
 - (권리증진) 예술가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모니터링 체제 마련 (실태조사 등),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 (조합결성) 예술가조합 결성 및 문체부장관예의 신고를 통한 지위 보호, 예술사업자와의 협의 요청 권한 및 예술사업자의 의무* 명시
- * ① 예술가조합의 협의 요청 거부 ② 예술가조합의 결성·가입·활동을 이유로 예술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예술가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금지
- (생활안정 방안 마련) 예술인의 특성 (단속적 계약 및 낮은 소득 등) 고려 및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연금제도 등 생활안정 방안 마련 검토

《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1980) 》

- 예술을 가장 완벽하고도 광범하게 정의할 경우 그것은 **생활의 필요불가결한 부분**
- 따라서 정부가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조장**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적 재능의 표출이 용이하도록 물질적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필요
- ① **(노동권의 보장)**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의해 정의된 노동 및 고용조건에 관한 법적 보호를 예술계들에게 확대 적용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함
- ② **(생명·건강의 보호)** 예술 활동 시 안전과 건강에 관련되는 규정을 확립해야 함
- ③ **(단체활동의 보장)** 고용 및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직업단체 및 노동조합 결성을 독려하고, 이러한 조직이 정책 수립·실행에 대표성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④ **(연금권의 마련)** 예술가 소득의 불확실함과 예술 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예술가의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한 특정 부류 예술가들을 위한 연금제도 마련

나 예술계 성평등 문화 실현

□ 여성대표성을 반영한 예술정책 추진

-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민관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국공립 문화예술지원기관·단체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대표성 확대
 - * (현행) 특정성별이 30% 이상일 것 → (장기) 여성대표성 강화
- 여성예술가 창작지원 확대 및 여성예술가 지위보장 법제화 추진 검토
 - *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유네스코 권고’도 여성의 창작성 계발 및 예술활동 분야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장려에 대한 관심을 포함
- 성평등 감수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 예술계 성차별·성폭력 금지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

- 예술계 성차별·성폭력 금지 및 성적자기결정권 보호
 - 성적 굴욕감·협오감 방지, 성적 요구 거부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 등 규정
 - 현장 예술인·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업으로 예술분야 소관 법률에 해당 조문 반영 추진(* 18.상~)
 - * (가칭)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또는 「예술인복지법」 개정 등
-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분야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예술계 성차별·성폭력의 특성과 피해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사항 등을 수록한 매뉴얼 제작(* 18.하~)
- 상시 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피해자 지원 및 보호 확대
 - (원스톱·종합지원) 예술인복지재단 내 피해상담, 법률·소송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전담창구 마련(* 18.하~)

□ 성평등 예술 창작환경 조성

○ 예술 분야별 성차별·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 공연예술 분야 조사(' 18년) → 2년마다 예술 분야별 실태조사(' 19년~)
- * 예술계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 실시(문학, 미술, 사진/ '17.6.~12.)

○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성차별·성폭력·위계폭력 금지 반영 의무화 추진

○ 예술계 맞춤형 성차별·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 예술현장 의견과 수요를 반영, 전문강사 양성(' 18.6월~, 약80시간 교육)
- 예술분야 희망자 대상 예방교육 실시*(' 18년)
- * 양성평등진흥원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과 연계, 예술계 종사/교육 경험이 있는 강사진

○ 예술분야 정부지원·공모 시 가해자 배제 및 예방교육 의무화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성폭력 범죄자 등의 제외지침 마련(' 18.3.31,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완료) 및 부정수급 집행점검
- 예술지원기관 공모·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예방교육 실시(' 18.하~)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등의 채용·징계 강화

- 신규 임용자의 서약서* 제출 의무화 및 공공기관의 성차별·성폭력 가해자 징계조치를 공무원 수준(무관용 원칙)으로 시행할 것 권고
- * 임용 전 성차별·성폭력 관련사실 없음 확인/ 임용 후 성차별·성폭력 경력 발견 또는 성차별·성폭력 연루 시, 인사 상 불이익 감수 등

2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예술지원체계를 민관협치 시스템으로 전환
 - 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예술인·단체의 자율성·자생력 제고 및 지역으로의 확산
-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위한 행정의 효율성·책임성 확보
- ◇ 협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수립-집행-평가 단계별 현장 소통 강화

가 국민이 신뢰하는 위원회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혁신

□ 위상과 역할 재정비(자율성·독립성·전문성 강화)

- (위상) 독립적 예술지원기관으로서 위상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제외 추진(관계부처 협의, ’20년)
 -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의무*로 효율성 기준에 따라 행정기관화 되어 예술현장 요구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
- * 경영평가, 임원임면, 조직운영·정원,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 (명칭/역할) ‘한국예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문예진흥법 개정, ’19년),
 - 예술창작 지원 중심*으로 기능 개편 및 문화향유 등 수탁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타 기관 이관 검토(’19년~)
- * ▲다년도 지원, ▲예술인·단체 중심, ▲사후지원, ▲예술인 경력단계별 지원 강화 등

□ 위원장 호선제 도입 및 위원 선임제도 개선

- (위원장) 자율적인 민간 주도형 기구가 되도록 문체부 장관 임명제에서 위원 간 ‘호선제’로 변경(기재부 협의 및 문예진흥법 개정, ’19년 완료 목표)
- (위원) 위원추천위원회에 적극적 역할 부여 및 장르별·기능별·성별 균형적 위원 선임(’18.하)
 - * (예) 장르(시각, 공연, 전통, 문학) + 기능(정책, 예술시장, 지역, 예술가치 등)

《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역할 개선(안) 》

[기존] 소극적역할	· 공모로 접수된 후보자 대상으로 위원추천위원회 심사 중심 운영
▽	
[개선] 적극적역할	· 위원 자격, 후보자 추천절차, 선정방식 등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 ·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판(성추행 등) 확인 등 공개검증 방식 활용 · 위원장 후보자 비전 발표회 등 역량 있는 인사 선임

□ 문예기금의 안정적 재원 유입구조 확보

- (신규재원 확보) '05년 이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
 - (단기) 공적자금(일반회계, 체육·관광·복권기금 등) 확보로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18~'19)
 - * '18 문예기금 재원 : 일반회계·체육기금·관광기금 각 500억원 및 복권기금 821억원
 - (중장기) 기금 안정성을 위한 재원 유입구조 법제화 및 안착('20년)
 - 체육진흥투표권, 복권기금 법정 전입 협의
 - * 여유재원 규모, 재원구조의 안정성, 법 개정의 상대적 용이성 등 종합 고려
- (기부금 캠페인) 문예기금 '예술나무 운동' 도 지속적으로 확산

□ 예술 현장과의 상시적 협치적 구조 마련

- (소위원회) 다양한 장르별·기능별 현장 예술인 중심으로 구성하여, 현장 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원회 주요 결정에 반영('18.하)
 - * (구성예시) 시각, 공연, 전통, 문학, 교육, 시장(국제교류), 지역, 예술가치 등 8개 내외로 운영(각 7명 규모), 필요시 소위 내 전문위원회 구성
- (참여형 사업 운영) 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 단계별 다양한 형태의 공청회·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정책 수혜자의 적극적 참여 보장('18년)
 - * 전문 민간예술단체와 공동 주관하는 등 민-관 협력형 사업 활성화

□ 지원사업 및 조직운영의 공정성 · 투명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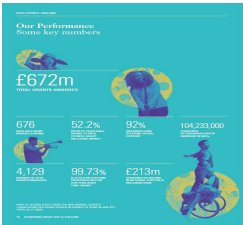
- (사무처 개방) 현장 예술인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간부직의 일부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
- (심의제도)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방식 고도화
 - 다양한 제도의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외압 등 부적절한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심의제도 연구 및 운영 확대(' 18.하~)

《 개선된 심의제도 시범운영 현황 》

	개요	시범운영 현황
공개심의제	일반관객 등 심의에 외부인 참관	'18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실연 심의에 관객평가단(10%) 및 일반관객 참여
심의자료 심층검토제	심의위원 전원이 모든 심의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	'18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1차) 등 문학 분야 지원사업 일부 및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

- 지원심의 ‘옴부즈만 제도’ (' 17년 도입) 전면 확대 및 심의에 대한 내·외부 강요·청탁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외압 신고제’ * 도입(' 18)
 - * 강요 · 청탁에 대한 지원심의 담당 직원의 감사부 신고 의무화 및 위반 시 징계
- 사전·사후 부적절행위 방지 대책 마련 등 심의위원회 운영관리 강화(' 18)
 - * 심의위원의 공정심의서약서 사전제출 의무 부여, 제척사유 관리 강화 등
- (눈높이 행정) 지원 절차와 정산서류를 간소화하고 예술인 입장에서 어려운 행정용어를 일상용어로 순화(' 18)
 - * 행정 매뉴얼에 대한 예술인 수용성 조사를 통해 행정용어를 순화
- (투명성 제고) 회의록 공개 및 연차보고서 발간

《 해외사례 : 영국 예술위원회 연차보고서 주요내용 》

	• 의장 및 사무총장의 리포트 • 예술지원을 통한 성과(Great Art and Culture)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보고 • 기금 수입 및 지출내역 등 운용현황 * 출처 <Arts Council annual report 2016-2017>	
---	--	---

나 문화체육관광부 역할과 기능 조정

□ 지원 심의 불간섭, 정부 정책기능 강화

- (팔길이원칙 구현) 문체부는 정책 수립, 행·재정적 지원 및 사후평가를 담당, 심의를 통한 지원금 배분은 예술위에서 독립적으로 결정·집행
- (정책기능 강화) 법제도, 중장기 전략수립, 성과평가, 전략연구 등 집중
 - 예술가 권리보호 제도마련, 시장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국·내외 예술의 가치 확산, 메세나 등 장기적 관점의 중요 업무 추진
 - 예술 지원의 성과를 무리하게 계량화하지 않고, 질적인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예술 특화형 평가지표 개발 추진('19년)
- (예술위와 협약) 문체부와 예술위는 협약*을 체결하여 기능과 역할을 명문화하고, 정책방향과 성과를 공유하여 긴밀히 협력('19년)

* (영국 문화매체체육부-예술위) 3년단위 재정지원 협약 체결(연극 등 6개 장르). 예술위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성과에 관한 예측 및 모니터링 정보, 재정 등에 대한 중대한 문제들을 문화부에 즉각 제출해야 함

- 협약 체결 방식 및 주요 내용 등을 연구하여('18.하~), 예술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공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문예진흥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기금 지원의 성과 평가 적용 검토

□ 예술 정책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 확립

- 예술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개편('19년)
 - 예술인 복지(국정과제 68)의 효과적 수행 및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해 (가칭)'예술인권리과' 및 '장애인 예술정책 전담 부서' 등 신설
 - 세부 사업 집행은 예술위 등에 일임하고 장르별로 요구되는 법제도 정책 대응을 위한 장르 정책부서 업무조정

다 공공예술지원기관의 공공성 회복과 전문성 강화

□ 공공예술지원기관 미션 및 역할 재정립

- 기존 기관들의 설립목적과 역할, 사업 등을 총체적으로 진단, 국립 기관으로서의 미션·역할과 기관장 역할 재정립,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예시 : 공공예술지원기관의 역할에 대한 예술 현장의 목소리 》

▲예술위원회·예술경영지원센터의 역할 차별화, ▲아르코극장·미술관의 전문성 강화, ▲예술의전당의 공적역할 강화(대관·임대서비스 외 기획력 등), ▲정동극장의 정체성 문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기획력 강화 및 공연시설 활성화 등 역할 수행,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립국악원 등의 민간단체와의 연계협력 사업 확대(직접사업 외), ▲예술원 회원의 개방성 확대, ▲한예종의 공공성 및 글로벌 위상 강화, ▲문학번역원의 해외 교류기구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 등

- 특히 국공립공연예술기관/단체는 창작·유통의 플랫폼 및 민간과의 상생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 재확립 추진
 - 진단·평가(설립목적, 역할, 유사중복사업 등), 민간 이관사업 정리 및 사업개편, 기관장의 직무수행능력 확립 등
- 협의체 구성('18.하~), 조직진단·검토, 재정립·발전계획(안) 수립('19.하~)
 - * 문체부, 예술지원기관, 예술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예술분야 특성에 맞는 공공예술지원기관장 선발방식 도입

- (기관장 선발방식 개편) 공개모집 방식 외에도 예술계 저명 인사 영입을 위해 후보자 추천 등 선발방식 도입 검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 행안부·인사처 협의)
 - * [참고사례] 개방형(고위공무원 등) 및 공모직위 선발 시 공개모집 원칙 + 인재 영입을 위해 부처 인재 발굴·추천, 국가인재DB 활용 발굴·추천 등 병행
- (기관장/예술감독 계약제도) 경영목표, 공연프로그램 운영, 외부협업/지원 등 계획 수립 → 임명권자(문체부장관)와 계약체결 → 임기 내 자율적 운영 및 책임경영, 공공성 확보
 - * 계약제 도입(안) 마련('19년) → 시범적용('20년) → 확대('20~'21년)
 - ** 공운법상 공공기관으로 임명절차 및 임명권자 등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는 제외

□ 공공예술지원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

- (공공기관) 예술지원기관의 특성과 공공성 측면이 고려된 기관 평가 지표 개발 및 공공기관 등 평가체계 개편(기재부 협의)
- (국립예술기관/단체) 지역·민간과의 상생·협력 노력도 및 달성도 등 예술분야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개편
- 문체부 소관 기타공공기관·단체 평가지표 개발('18.하~) → 평가편람 개정('19) → 적용('20년~)/ 공공기관은 관계부처 협의 후 적용
- * (예시) 예술단체, 기획자 등 매개인력 등과의 협업, 신진 예술가, 유망 민간 단체 발굴, 기획 프로그램을 통한 공연기획 제공 등 플랫폼 역할 평가 등

라 협치체계 구축 및 법제 정비

□ 민-관 협치에 기반한 정책 협력체계 구축

- 예술정책 및 예술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가칭)예술정책협의체 : 문체부-예술지원기관(예술위 등)-예술계-학계-지역 대표 등 참여, 주요 정책 의견수렴(안전별로 참석자 유동적)
- (가칭)예술지원협의체 : 예술위 중심의 기금배분 및 주요사업 추진 협력체제로 예술위-예술지원기관·단체-예술현장-지역문화재단 등 참여
- * 문체부는 '팔길이 원칙'에 따라 행정적 지원 역할 및 법·제도 등 정책개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술정책협의체'에서 논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현장 밀착형 운영 기반 구축
- (가칭) 정책개발팀 신설로 정책개발·사업설계·의제발굴 및 예술 현장에 적합한 평가체제 마련
- 개방형 직위 도입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이사진 공개 추천·선정*으로 민간 참여 확대 및 현장수요에 따른 사업 추진
- * 이사진의 당연직 비중을 낮추고 장르·정책 의제를 고려한 이사진 구성

○ 장르별·분야별 정책협의체 활성화

- 문학진흥정책위원회(' 17.2월~),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17.2월~), 공연예술협의체(' 18.하~) 등으로 예술인·전문가 정책참여 확대

□ 지역분권 및 자율성 제고

○ 지역 예술지원기관 확대 네트워크 구축(' 19년)

- 예술위가 중심이 되어 예술지원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기관 또는 지역별 지원기관 합동 워크숍* 등 개최

* 기관별·지역별 성공사례 발표,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 등

- 예술위 소위원회 지역분과 및 예술위-지역문화재단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력사업 발굴

○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 자율적 협업 관점에서 지역 중심 추진체계 개편

· 중앙-지역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 재정립, 지역별 종합계획수립, 문화예술교육 조례 제정 등 기반 체계화

- 광역센터 역할 강화 및 기초단위 추진체계 구축

· 광역센터를 지역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밀착형 추진을 위한 기초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방안 마련 추진

중앙	지역
지역의 자율적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기반 조성 지원(물적, 인적, 제도적 인프라)	지역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을 활용, 지역사회 기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추진

○ 예술인 복지정책 지역 협력체계 구축

- (협업강화) 주거환경 개선, 공공 직무창출, 임대공간 제공 등 협업, (가칭)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구성
 - * 복지재단-13개 지역문화재단 간 MOU 체결 및 문체부·지자체·재단 공동 워크숍 개최(매년 2월), 정책방향 공유 및 공동사업 추진('19년~)
- (지역확산) 복지재단 사업 신청대행·불공정관행개선 등 협업('18년~) 및 지역문화재단에 예술인 복지 전담인력 배치('20년~)
 - * 예술인 고용보험·복지금고·창작준비금 등 사업 안내 및 예술활동증명신청 대행 등

□ 예술 분야 법체계 정비

- (필요성) 문화예술진흥법('72년 제정)은 오랜 시간 개정이 반복되면서 체계성이 부족하며, 장르별 진흥법(공연, 문학, 공공디자인 등) 및 문화기본법 제정 등으로 전반적인 법체계성·정합성 진단 및 정비 필요
 - 또한 장르별 분법 요구 등 신규 법제화 요구, 장르별·기능별 기존 법령의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도 필요
- (내용) 문예진흥법과 장르별·기능별 지원법의 관계 재설정 및 시대 변화와 현장요구에 부합하는 예술분야 법령의 실효성·체계성 확보 등
- (계획) 예술분야 법체계 연구·진단('19~'20), 재정비 추진('20.하~)

《 예술분야 소관 법령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

▲(문예진흥법) 1972년 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들이 존재 ▲(공연법) 공연장 안전관리 등 시설관리 위주의 법체계로 공연예술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재정비 ▲(관계재설정 등) 문화기본법 제정 이후의 관계, 문화산업 및 문화예술 분야의 중복성, 문예진흥법과 장르별 지원법 간 관계 설정 및 체계화

3 예술 가치 중심의 창작 지원

가 예술활동의 지속성 · 자생성 강화

□ 예술 창작에 관한 정당한 대가체계 형성

- (대가기준 마련)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적정대가 마련
 - 장르별 도입 : 미술창작대가기준 마련('18년) → 공연 등 확대('19년~)
 - 단계적 추진 : 국·공립기관 등 공공분야 시범 적용→ 법제화
- (재판매권 도입)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일명 '추급권' (Artists' Resale Right))
 - 법적 근거 마련('19년) → 유예기간 3년 후 시행('22년)

□ 예술인 · 단체 성장을 위한 장기/집중 지원제도 도입

- (공연단체 집중 육성)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연예술단체를 최소 3년간 지원하여, 자생력 확보 및 예술인의 지속적 활동기반 마련 추진
 - (대상) 공연사업 관련 운영·제작·유통 등 통합지원
 - * 기획(매개)전문인력 인건비, 제작비, 홍보마케팅비 등 공연사업 관련 비용
 - (특징) 단체별 특성 및 규모, 성장단계 등을 고려한 지원 다각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비전·목표, 경영전략 등) 수립을 위한 컨설팅 병행
 - * 예) 초기/ 성장기반 마련/ 성장기진입 및 안정화 단계로 구분 차등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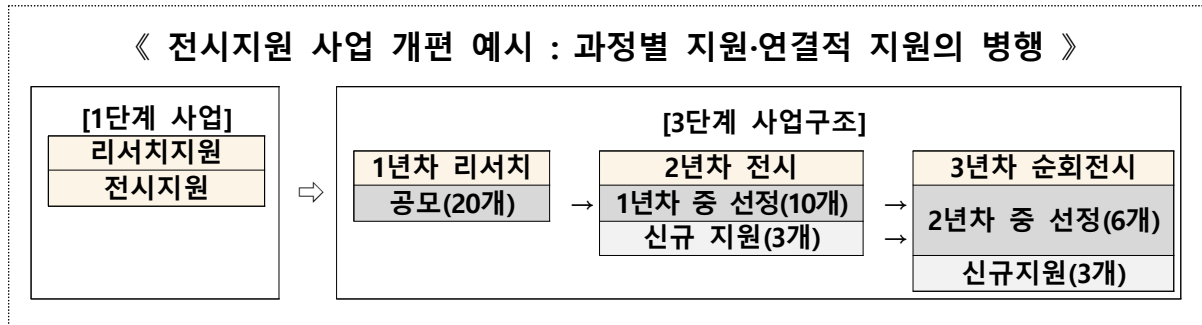
【국내사례】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 지원('06~'09)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협약서 체결 및 단체에 연 5천~1억원씩 최대 3년간 연 15억원 규모 지원(대관료·무대제작비·인건비 등), 매년 평가로 지속 지원여부 결정

【해외사례】 예술단체 자생력강화('15~'18) : 영국 National Portfolio Organisations

- 4년 단위로 영국예술위-예술단체 간 재정지원협약 체결, 안정적 예산 지원
- '15-'18년 총663개 단체, 10억파운드(약1조 4,476억원) 규모(단체별 연간 5억원 수혜)

- (창작산실 사업 개편) 기획·창작-향유-유통의 선순환을 위해 사전제작/연구부터 발표까지 3단계 구조로 창작지원을 개편
- (공연) 사전 단계를 추가하여, ‘사전 조사연구(리서치), 사전제작 → 공연’ 으로 최소 3년 지원 및 과정별/단계별 전문가 모니터링제 운영
- (미술) ‘리서치(사전연구) → 전시 → 순회전시’ 로 최대 3년 지원



□ 예술활동의 토양이자 터전인 창작공간 조성

- (지역 문예회관 공간 다양화) 공연·전시시설 외의 다양한 범주의 공간 개념을 도입, 지역 예술활동의 구심점 역할 강화
- 문예회관 리모델링·건립 지원사업(균특회계)에 공간 조성 가이드 라인을 마련(' 19.상), 다양한 사례 제시 및 조성 유도
 - * 예) 네트워킹 공간, 전문 예술인·단체 연습실, 녹음실(스튜디오), 음향·영상 편집실 등
- (일정) 문예회관 건립·리모델링 지침 마련, 보급·시행(' 19하~)

《 해외사례 : 프랑스 La Seine Musicale 》

- (현황) '17.4월 개관, 건물 36,500m², 6천명 수용 공연시설
- (목적) 구 르노자동차 공장 부지를 활용, 지역사회 문화예술 중심지로 재개발
- (방식) 시 의회-기업 27년 장기계약(기업이 계획, 자금조달, 건설, 운영, 관리 등 담당)
- (구성) 오디토리움 형태 가변형 대공연장(5천명 이상), 클래식 공연장(1천명), 연습 공간, 오케스트라실, 전문 녹음스튜디오, 상업시설, 세미나·교육공간, 주민 공원 등

- (전통예술 창작 거점공간) 연습·기획·작품제작·실험공간, 공방 등
 - 컨설팅, 연습실 제공, 실험무대, 홍보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문학집필공간 운영) 문학창작공간 제공 및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
 - (대상) 집필공간을 보유한 문학관 또는 문학창작공간 운영 단체
 - (지원) 공간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 * '18년 5개 공간 178명 지원
- (메이커스페이스) 도시재생 지역에 미술 공동 창작·전시·판매 공간 조성
 - 공예·판화 공방 등 시범 조성(' 19년) → 단계적 확대

《 메이커스페이스 개요 》	
· (의미) 원하는 사물을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작업 공간 · (역할) 일반 개인도 최종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 제공	
공동작업실	미술작가의 공동 창작 공간 및 기자재 공유 지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운영
창업 컨설팅	작가 또는 작가로부터 교육받은 주민의 창작활동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법률자문, 마케팅 등 지원
전시·판매 지원	입주 또는 지역작가의 작품 전시 또는 판매

□ 예술계 담론 활성화를 위한 비평 지원

- (미술평론 전문화) 미술평론 정기연재(연 8회 이상) 지원, 정부지원 전시의 비평 의무화 등 전문 평론가 양성 여건 마련(' 19년)
- (사이버문학광장 운영) 창작자, 비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온라인 비평 공간 활성화, 문학정보·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문학 저변 확대(' 18년~)

□ 예술의 다양성 확대를 위한 다원예술 지원

- 기존의 장르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 구조 개편(' 19년~/ 공모사업에 분야 신설 또는 기획개발 지원 등 사업개발)
- 다양한 가치를 담은 비주류 대중예술, 독립예술, 대안예술 등 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지원

나 경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인력양성

- ◇ (예비/신진)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진입경로를 제공
- ◇ (중견) 국내외 인지도 제고 및 충분한 작품발표 기회를 제공
- ◇ (원로) 경력·경험의 지역사회 환원 기회 및 아카이빙 등 지원

《 예술 경력단계별 지원 예시 》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기타
원로	·원로예술인 공연 ·지역 원로 금빛제전 ·원로연극제	·디지털 아카이빙 ·작품 기증 ·공공수장고 저리 임대 행정처리 지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원로문화예술인복지 지원
중견	장르별 공연제작 및 재공연 지원 해외 축제·극장 진출/참가 리서치, 순회공연 공연예술 스태프 공연예술 창작산실-창작실험활동제작	작가 소개를 위한 다국어 자료집 발간 해외미술기관 전시 및 아트페어 참가 창작산실 전시 시각예술전시 해외아트페어 참가 시립미술관전문인력 작가미술장터 미술은행 작품구입	문예지 발간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서점 ·도서관 상주작가 ·아르코창작기금	·예술인 파견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창작준비금 ·예술가 해외레지던시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신진				
예비 (졸업자, 청소년)				
	·신진국악 실험무대	·화랑 전속작가제		
	·문화예술 연수단원 육성			
	·예비예술인 생애처음			
	·전통예술 고교전공생 균형성장			

□ 예비/신진예술가 진입 경로 확대

- (예비예술인 ‘생애 처음’) 공공지원금 수혜경력이 없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비용 및 전문가 멘토링, 통합 홍보 등 제공 추진
- (신진예술가 입문) 현행 무용·연극·미술 등의 예술지원사업을 개편, 입문단계의 예술가를 위한 지원 마련
 - * 신진예술가 창작활동 확대, 단체 입단 등 예술계 진입기반 마련
- (찾아가는 청년예술가) 청년예술인(만34세 미만)의 지역 복지시설, 문화기관 등에서의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제공 지원 추진
 - 연간 850여명의 일자리창출(17개 광역단체별 50명 기준)
 - * ‘소외계층 문화순회’(문예기금) 등 기존사업 개편 또는 세부사업 연계 검토

《 국내사례 :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 》

- (작은 예술지원 : 소액多کم) 홍대 중심의 창의적·실험적 소규모 문화예술 프로젝트 발굴, 지원
 - 대상 : 홍대 지역 중심으로 3개월 이내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예술가·단체
 - 내용 : 시상금 100만원, 프로젝트 발표 공간 및 홍보 지원
- (최초 예술지원) 잠재력 있는 청년예술인 발굴 및 진입 이후 필요한 성장과정 지원
 - 대상 : 39세 이하 또는 데뷔 10년 이하 청년예술인·단체
 - 내용 : 사전연구형 지원(창작 사전준비, 200만원), 공연 등 창작물 발표 비용(500~1500만원)

- (청년국악인 ‘첫 무대’) ▲신진 국악 실험무대로 창작·작품 발표 기회 확대(’18년 20팀), ▲정동극장 ‘청춘 만발’로 30세 이하 청년 국악인 ‘첫 무대’ 제공(’18년 16팀)

□ 예술인력 양성 및 신직무군 창출

- (전통·공연예술)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및 관계망 구축 지원
 - 전공자·실연자 → 기획·제작자 등으로의 성장 기회 제공 및 문화산업·IT기술 활용 등 융합형 인재 양성

· (전통예술) ▲ ‘전통예술 기획자 양성’ 교육 강화(기획·제작, 홍보·마케팅, 무대기술 등), ▲해외 성공사례 연수 지원, ▲해외 유관 기관, 단체 대상 인턴십

· (공연예술) 청년예술가 정기포럼(유관 협·단체, 기획제작사 등 협력)

○ (시각예술) 신직무군 발굴·지원 등 일자리 창출(연 700개)

- (미술) 중소화랑 전속작가제(100명)*, 전시·기획인력 세분화**(200명), 전시제작인력 전문화(100명) 및 도슨트 전문직업화 등

·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등에 시각예술 관련 직종 세분화, 신직무군 반영 검토

* 작가 월 백만원 지원/4대보험+표준계약서 의무화로 계약만료 시 고용보험 혜택 가능

** 연구(리서처), 전시기획(큐레이터), 자료수집·관리(아키비스트), 교육(에듀케이터) 등

- (공예·디자인) 청년 공예·공공 디자이너 창업 지원(인턴십·창업 300명)

○ (문학) 문인들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문학저변 확대

- 도서관·지역문학관 상주작가 배치, 작은서점 대상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서점’ 사업으로 문학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역문학 진흥

* (도서관) '17년 33개소 33명 → '22년 70개소 70명/ (지역문학관) '19년 37개소 37명 → '22년 50개소 50명/ (문학서점) '18년 30명 → '19년 50명

□ 예술대학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 프리랜서 형태 및 개인 창작활동이 많은 예술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예술대학에 적합한 평가기준·체계 마련

○ 취업률이 포함된 일률적인 대학평가 체계를 개선 추진(교육부 협조)

* 대학은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사업 참여 제한, 정원 감축 등 제한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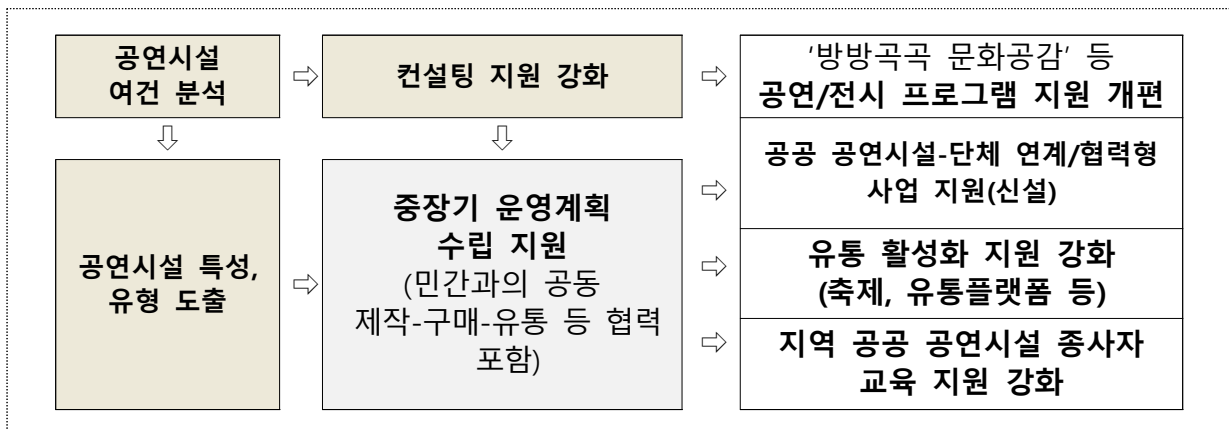
** ['18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 발전계획 수립·성과/교육여건, 대학운영 건전성/수업·교육과정/학생지원/교육성과(학생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지역사회협력 기여 등

다 지역 공공 공연시설 운영 혁신 및 민간 협력 강화

□ 예술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정비

- (운영혁신) 공연 창·제작, 배급,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시설별 유형·특성에 따라 기획·제작비 지원 등 다각적 지원체계 마련
 - 기획·제작 역량 강화 및 지역 예술단체와의 상생*을 위해 공연 시설-단체 연계형 예술사업비 지원
 - * 민간 매개인력, 공연기획사, 공연단체 등과의 공동 제작, 프로그래밍 등 협력
 - 공연시설 여건 분석*, 시설별 유형·특성에 따른 컨설팅 지원 등 강화
 - * 운영주체와 규모(재정, 인력, 공연·전시 사업비 등), 해당 지역 재정자립도, 프로그래밍 등을 기초로 전국 문예회관(총 238개)의 강·약점 및 정체성 등 분석
-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개편) 공연 등 프로그램 선정 및 심사, 지원 대상 문예회관 매칭 방식 등 개편
 - * △공연프로그램 지원(민간·국공립예술단체 우수 프로그램/ 소재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 △기획제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문예회관 기획 및 레퍼토리 제작 지원 등) 등
- (추진계획) 지원사업 개편안 마련('18.하) → 시설-단체 연계형 사업 계획 수립 및 시범적용, 방방곡곡 사업 개편('19년~) → 확대('20년~)

《 지역 문예회관 지원체계 개편 및 운영 혁신 (예시) 》



《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

▲방방곡곡 사업으로 지방 기획자(공연단체)들이 소멸·구축됨 ▲ 광역 단위는 큰 범주의 창작지원과 기획이 가능한 환경인데, 광역에도 기초와 같이 방방곡곡을 지원하면 지역 단체는 설 자리를 상실 ▲ 중앙에서 단기간에 일괄 선정하여 전국에 배분하는 방방곡곡 사업의 심사, 선정방식 개선 필요 ▲작품·단체 쏠림현상 방지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신규 우수작품·단체와 기초 예술작품 적극 발굴 필요

□ 공공예술기관/단체-민간의 상생 모델 개발

- (방향) 상주단체 지원사업을 재설계, 장기 지원(최소 2년)으로 지역 공연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 여건 마련 및 역량 강화
 - * 지역 소재 민간 공연단체에게 상주공간(무대, 연습실, 사무실 등)을 제공하여, 공연 및 타 분야·장르 융복합 작품 제작, 발표 및 레퍼토리화 유도
- (계획) 지역 공공 공연시설(문예회관) 및 공연단체 의견수렴(' 18.하~)
 - 개편방향 도출 및 지원체계 재설계 · 시행(' 19년)

《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 개편(예시) 》

구분	비고
단년도 공모 ⇒ 연속 지원	■ 공연시설-상주단체 간 협약 체결 후 공연시설 내 상주하며, 공연 예술 창작, 기존작품 재공연, 레퍼토리화 등을 위해 최소 2년간 지원 * 1년 단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연속지원 여부 결정 ■ 지역 공연시설, 민간 공연단체 실정에 맞게 단년, 다년 지원형태 선택 가능 * 단/다년의 경우 △작품 창·제작, △기존 레퍼토리 활용 공연 및 관객 확대·개발, △관객교육 등 유형 선택 가능
지원 졸업제 도입	■ 연속적 지원으로 안정적 창작 활동을 보장하되, 졸업제를 도입하여 신규·유망 단체에게도 지원받을 기회 제공

4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복지

가 예술인 직업환경 및 복지제도 개선

□ 예술인 직업 환경 및 복지 실태조사 강화

- (직업군 분류 및 실태조사) 정기조사로 예술분야 직업의 시대적 변화 파악 및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18년 기초조사, '19년 장르별 세부조사)
 - (내용) 문화예술진흥법상 예술의 정의*에 따른 인위적 장르 구분을 재검토하여, 실제 정책대상으로서의 예술인 직업·직무를 조사
 -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 등 13개 분야
 - ** 매개영역도 포함하여, 매개인력의 직무·직업군 체계화·표준화 추진
 - (방식)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초로 세밀한 분류체계를 구성하고, 직업군별 정의·설명을 마련하여 직업으로서의 객관적 지위 확보
- (정책 타당성 조사) 복지정책의 시급성·타당성 뒷받침 논리 개발
 - * 농·어업인 등 타 직업군 대상 복지정책과의 비교, 예술인 설문조사를 통한 복지정책 확대방향과 대상 재검토 등
- (해외 정책현황 조사) 주요국 지원정책 파악으로 발전방향 모색
 - (범위) 법정 사회보험 외에 예술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비제도적 복지영역 및 일반 제도 내 예술인 복지현황 등 전반적 지원제도
 - (방식) 종사자 현지·온라인 인터뷰, 예술인복지 국제 심포지엄 등
 - * 예술인 복지제도 마련(프랑스·독일), 관련법 제정 및 불공정행위 근절 등(캐나다), 예술가조합 등을 통한 자발적 복지체계 구축(미국) 등

□ 예술인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인문·노동 교육

- (내용) 예술인-사회 협업 확대를 위한 인문학, 사회적 예술론 교육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
 - * 지역·사회 속에서 예술인이 직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 제공 (예술과 파트너십, 예술 기관론, 예술과 IT, 예술인의 노동과 권리 등)
- (방식) 4~8주 과정의 온·오프라인 교육 개설 및 재단 사업 참여자 대상 교육 이수 유도 등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의식 제고

□ 현장 예술인 주도의 교육프로그램 지원

- 협·단체를 통한 현장예술인 맞춤형 교육 지원
 - (방향) 장르별 단체들이 현장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강의형)을 직접 설계·운영토록 하여 예술인의 직업역량 강화 지원
 - * 지원자격(안) : ① 3개 이상의 예술 법인·단체 컨소시엄 ② 3개 이상 시·도 대상 수강생 모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법인·단체
-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 (내용) 예술인(5인 이상예술활동증명 완료자)이 프로그램 기획·신청 시 사업비를 지원(1~3천만원), 소규모 예술공동체 활성화 및 가치 공유 촉진

□ 예술인 파견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재구조화

- (내용) 기관·기업과 예술인을 연결, 예술분야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기업의 경영혁신 등에서의 예술의 역할을 확대(예술인파견지원)
 - * ('14년) 331명/178개 → ('18년) 1,000명/258개

《 2017년 사업 주요성과 》

공간가치 향상	주민 복리후생	조직문화 개선	관광자원 개발
			
(마누파콤) 매장 쇼룸을 전시 공간으로 재창조	(마포화랑나눔) 예술활동으로 관계형성 및 노년예술교육	(KT&G) 드로잉 워크숍 등 직원 정서함양·소통증진	(신진해운) 선원 섬 주민 여행객 인터뷰로 관광자원 개발

- (질적 개선) 공유가치 생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관리 체계 마련(' 18년~)
 - * 사회적기업과의 협업 증대, 예술인 실무교육 강화 및 기업 사전 워크숍으로 성과도출, 전문위원단 운영으로 모니터링 · 성과관리 · 리스크관리 체계화
- (기반 확대) 예술인-공공서비스 간 파트너십 확대 등 직무영역 다각화 (' 19년~), 지역·분야별 자발적 결연과 협업 지원시스템 마련(' 21년~)

나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추진

- * 국정과제 68-2-1 : 엔테르미땅에 준한 예술인 실업급여를 적용,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 (방향) 단속적,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예술인 특성을 반영한 고용보험을 도입, 생활안정 및 지속가능한 창작활동 기반 구축
 -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25.1%로 임금근로자 가입률 68.8%과 2.5배 이상 차이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문체부), 2014 사회보험 가입현황(통계청))

《 예술인 사회보험제도 도입 · 지원 현황 》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프리랜서	근로자	프리랜서	근로자	프리랜서	근로자	프리랜서	근로자
가입제도	가능		도입 예정	가능	가능		가능	
보험료 납부	예술인	사업주	예술인	5:5	예술인	5:5	예술인	5:5
보험료 지원	50%지원	-	도입 필요	표준계약 체결 시	50%지원		-	-

- (추진방식) 문체부-고용노동부-예술계 협의체 구성·운영(' 17년~)
 - * 예술분야 ·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가입 방식, 가입 대상 및 범위, 피보험기간의 산정, 예술인 구직활동의 인정 범위 등 의견수렴
- (일정) 프리랜서 형태의 용역계약을 주로 체결하는 예술인에게 적합한 제도설계 및 법안 국회 제출(' 18.하)
 - (가입지원)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단’ 설치 및 보험가입 사무대행 · 실업급여 안내 등 지원창구 운영, 고용보험 온라인 가입시스템 구축
 - (홍보) 협단체, 지역문화재단과 협업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매뉴얼 제작 등

□ 산재·사회보험 가입률 향상 및 실효성 제고

- (산재보험) 예술인 산재보험 실효성을 향상 위한 제도·서비스 개선
 - (제도) ▲현) 보험가입 신청일 현재 유효한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제출
→ ▲개선)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체결한 계약서 등 요건완화 검토 추진
 - * 근로복지공단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개정사항, 관계기관 협의 추진 ('18년~)
 - (서비스) 현행 우편·이메일 외에 ‘온라인 신청’ 도입('19년)
- (사회보험료 지원) 현행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지원의 효율성 제고
 - * 지원인원 : '14년 189명 → '17.12월 1,306명
 - (신규가입 촉진) ▲현행)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예술인·사업주에게 보험료 50% 지원 → ▲개선) 신규가입자 60%, 기존 40%
 - (형평성 고려) 저작권·출판 계약 지원기한 설정(최대 24개월 등)

《 예술인 복지 사업 신청 편의성 제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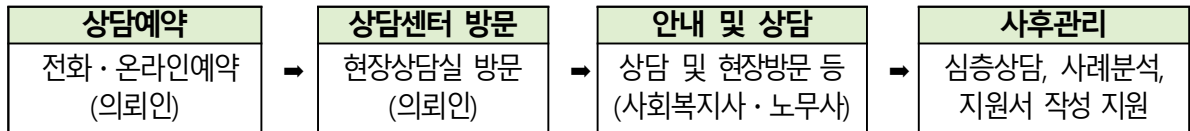
- (주요내용)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과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사업 신청 서류 간소화 및 업무 효율 제고
- (법적근거) 부처 간 정보공유의 법적근거를 담은「예술인 복지법」개정안 시행 ('18.10월~)

□ [가칭]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를 통한 접근성 강화

- (내용)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직업교육, 사회보장 제도(복지부·지자체 등) 안내 및 신청서비스를 원스톱 지원('20년~, 방문·온라인상담 병행/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
- (사회보험·교육) 예술인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사무 대행 및 실업 예술인 대상 재취업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설·운영
- (예술금융) 신용도가 낮은 예술인 대상 예술인 복지금고 이용을 위한 세부 상담 및 신용회복 지원, 일반 서민금융 이용 안내 등
- (권리구제) 경력단절·여성 예술인 등을 위한 맞춤형 종합 복지상담 및 예술계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를 통한 임금체불 등 피해 구제

- (운영) 사회보험 · 금융 센터, 교육센터, 권리 종합지원실, 문화복지 공간, 창작공간 등 구성

《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 체계도 : 기관 협업 및 통합적 사례관리 》



다 예술인 생활 지원 확대

□ [생활자금]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으로 예술인 생활 지원

- (내용) 예술인의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긴급생활자금 대출
 - * 국정과제 68-2-3 : 예술인복지금고 운용, 긴급생활자금 등 긴급지원시스템 마련
 - ** 일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예술인이 77.5%, 복지금고 설립 시 이용 의향이 78% (2017.11월 예술활동증명완료자 4,151명 대상 온라인 설문)
- (일정) 금고운영 인적 · 물적기반* 구축(' 18), 시범운영(' 19) 및 정식 운영(' 20~ / 긴급생활자금 → 주택자금 대출로 확대, 모바일서비스 구축 등)
 - * ▲운영기관 설립(설립위·관리위), ▲제규정 제정, ▲금융시스템 구축, ▲상품개발 등

□ [문화향유] 문화예술인 패스 개편으로 맞춤형 혜택 제공

- 예술인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발급하는 문화예술인 패스*의 혜택·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

- (현황) 43,837명 발급(17.10월) / 박물관 266개소, 미술관 46개소, 공연장 119개소 참여
- (내용) 참여기관의 전시 · 공연 관람 시 청소년수준으로 할인율(30% 내외) 적용
- (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장르 대표단체 정회원 / 학예사 · 문화예술교육자 등

- ▲1단계(' 18~' 20) : 제휴(' 17년 431개→' 20년 1,000개) 및 혜택 확대*, ▲2단계(' 21~' 22) IC칩 카드 기반으로 전환(신원 확인, 금융기능 부가) 및 지원 사업 통합 플랫폼으로 활용** 추진

* 대형 뮤지컬 1+1 혜택, 전국 체인 커피숍 제휴 할인, 문화재 관람 할인 등

** 복지금고 계좌 개설, 예술인패스를 통한 활동증명 및 창작준비금 등 수령 · 사용 등

□ [심리상담] 창작활동 스트레스 완화 및 창작의욕 고취

- (내용) 개인 심리상담(' 17년 31개 기관 지정) 비용 지원 및 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고충 해소·소통 증진
 - * 심리검사·상담(정신건강, 대인관계 등)·집단상담(우울증 등)·예방 및 위기개입 등
- (개선) 개인 심리상담 자부담 비율 설정을 검토,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수혜자 확대(' 18년~), 상담 기관별 만족도 평가기준 마련 등으로 상담의 질적 제고 및 성폭력·성희롱 등 특화기관 신규 지정(' 19년~)

□ [자녀돌봄] 경력단절 방지 및 지속적 창작환경 조성

- (내용) 근로시간 구분이 없는 예술인 활동 특성을 고려한 시간제 돌봄 제공
 - * 여성예술인 실업원인 '육아'(44.2%), 해결은 '직장·인근 보육시설 설치 희망'(41.6%)
- (현황) 2개소(대학로·마포), 24개월~10세 미만 대상(화~일, 23시까지)
- (확충) 지자체와 협업, 지역예술인 활동거점에 센터 확대
 - * (협업 예시) 지자체→유희 공간 제공, 문체부→리모델링·교구 지원 및 예술인 자녀 보육서비스 비용 일부 지원(아이돌보미 파견비용, 급식비 등)

□ [주거] 예술인의 창작·주거 연계 확산을 지원

- (현황) 지자체별 예술인주택 보급(15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국토부, 임대료 20~30% 저렴) 입주요건에 '예술인' 추가(' 17.2월)
 - * 주거현황 : (자가) 예술인 37.5%, 국민 52.3%, (월세) 예술인 31.5%, 국민 24.2%

《 예술인 주택 사례 》

- 만리동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마콕(M.A.Coop), 총 29세대 공급('15년)
 - 공동작업장, 공용공간(커뮤니티룸)을 갖추고 예술협업·지역사회 공헌 지향
- 성북구 연극인 공공임대주택, 1호 11가구, 2호 12가구 공급('17년)
 - 지하 연습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연극인 맞춤형 주택
- 행복주택(국토부) 공급 ('17년도 2만호 모집, '18년도 3만 5천호 모집 예정)
 - * 입주자격 중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이 포함되어 예술인 공공임대주택신청 가능

- (특화) 일정규모 이상 단지에 다목적 공용 전시·공연 공간 조성 또는 예술인 주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추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 입주예술인 협동조합 형태의 자치회의 예술품 장터, 예술인과 함께하는 창작부스 운영 등
- (확대) 예술인의 주거·창작·공공생활·전시 및 공연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우수사례 홍보 및 확산 방안 마련('19년~, 관계기관 협업)
- (일정) 정책연구('19년) → 국토부지자체 등 협업사업 발굴 → 조성 확대

□ [의료지원] 예술인 의료비 부담 경감

-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의료비 지원(50~500만원) 및 단계별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사업개편 추진('19년~)
 - * 건강보험 비급여항목 단계적 급여화('18~'20년),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가 일상에서 누리는 예술 향유 여건 조성

□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미술)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콘텐츠를 지역으로 확산

- 우수 전시가 지역 유희 전시공간에 순회 전시되도록 전시콘텐츠 보급지원
- 전시콘텐츠 공급자(미술관, 비영리전시공간 등)-수요자(문예회관전시실, 상업전시공간 등)을 연계하는 전시공유플랫폼(B2B) 구축*

* 시범 지원('18년, 10억) → 플랫폼 구축('19년) → 플랫폼 연계 전시 지원('20년)

○ (공연예술) 지역, 마을 상주단체 활성화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

-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간+콘텐츠+인력의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 공간(연습, 창작, 작업, 발표 등 특화/복합공간) 등을 활용한 예술가·단체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 문화특화지역('14~/'18년 문화도시형 26곳, 문화마을형 21곳)

거점 형 문화도시('06~) : 역사전통문화도시(경주, 전주, 공주·부여)

** 국내외 예술가(단체)/기획(매개)자 참여 공동 프로젝트, 지역 예술가(단체) 레지던시 + 지역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공연예술-타 장르/산업 융합 등

《국내 사례 : 남원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 (구)KBS방송국 활용 시범운영 사업으로(남원시),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 중
- 남원 소리문화브랜드 구축을 위한 <사운드 아티스트 레지던시&워크숍>, <문화예술 아카데미> 등 프로그램 시범운영

○ (전통공연예술) 지역, 마을 공동체의 마을잔치, 민속잔치 등 활성화

- 정월대보름 등 민속절기에 전통공연예술을 소재로 한 마을잔치 및 민속잔치(당산제, 대동놀이 등)를 지원, 마을 공동체 문화 재현

* 기존 '작은 마을 공동체 전통예술 잔치 사업'을 보완·개선('19년), 추진('20년~)

- (문학)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문학진흥의 주요거점화(' 17년 26개 → ' 22년 50개)

* 전시, 문학 창작교실, 작가와의 대화, 문학기행, 공연, 축제, 포럼, 독서회, 낭독회 등

□ 삶의 질을 높이는 예술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

- 행정절차의 간소화, 규정의 명확화 및 품질 관리 강화
- 업체중심 → 작가중심으로 전환하여 작품 수준 향상 기대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예시) ① 설치 적용시점, 연면적 합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② 건축 허가권자와 미술작품 설치 승인권자 일원화 등 심의·승인 절차 보완, ③ 작품 정보 표시 의무, 지방자치단체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 생활체감형 공공디자인 확산

- 범죄예방, 학교·여성 폭력예방, 교통안전, 재난대비 등 생활안전 확보
- 장애인,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 등 모든 이를 위한 이동성 향상, 문화여가 향유 수준 개선 등을 위한 공간 개선 사업 추진
- 길 찾기 쉬운 도시 안내체계, 체육·관광시설 등 안내체계 개선 등 생활편의를 더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선
- 동·마을 단위 시각이미지, 도시 주요 공간 공공시설물, 노후 공원 및 공개공지 등 생활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 개선 추진

《 도쿄 마루노우치 재개발 지역 :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 조성 사례 》

- 무단차로 보행성 강화, 통합 길 찾기 정보, 대형 벤치, 색채와 재질 통합



□ 일상에서 누리는 공연예술 축제 · 경연대회 재정비

- (축제 개편) 지역 예술가/단체, 공연시설 등 교류 및 유통의 핵심 플랫폼 및 지역 주민의 예술 향유 플랫폼 역할
- (공연예술)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운영 개선 및 ‘시설-단체’ 네트워킹 지원 강화(상시교류 가능한 온라인플랫폼 구축 등)

기존 약점	개선(예시)
· 장소·기간의 제약성(제주, 6월) · 쇼케이스 위주로 공연단체 작품 홍보 및 네트워킹 기능 미흡	⇒ · 쇼케이스 횟수·공연시간 및 단체 홍보세션 확대 · 축제 이후 지역 문예회관-공연단체를 매칭, 실질적 정보교류의 장(아트마켓/ 10월) 및 상시 교류 온라인플랫폼 운영

- (전통) 한국민속예술축제 · 청소년 민속예술제를 축제 · 교류의 장으로 개편
 - * (기존) 지역민속예술 경연대회이나 신규콘텐츠 발굴에 한계 → (개편) '19년 개최 60주년을 계기로 축제와 교류의 장으로 개편(청소년 분야는 필요 시 유지)
- (경연대회 평가 개선) 장르별 경연대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관객 참여 평가제도 도입 추진(' 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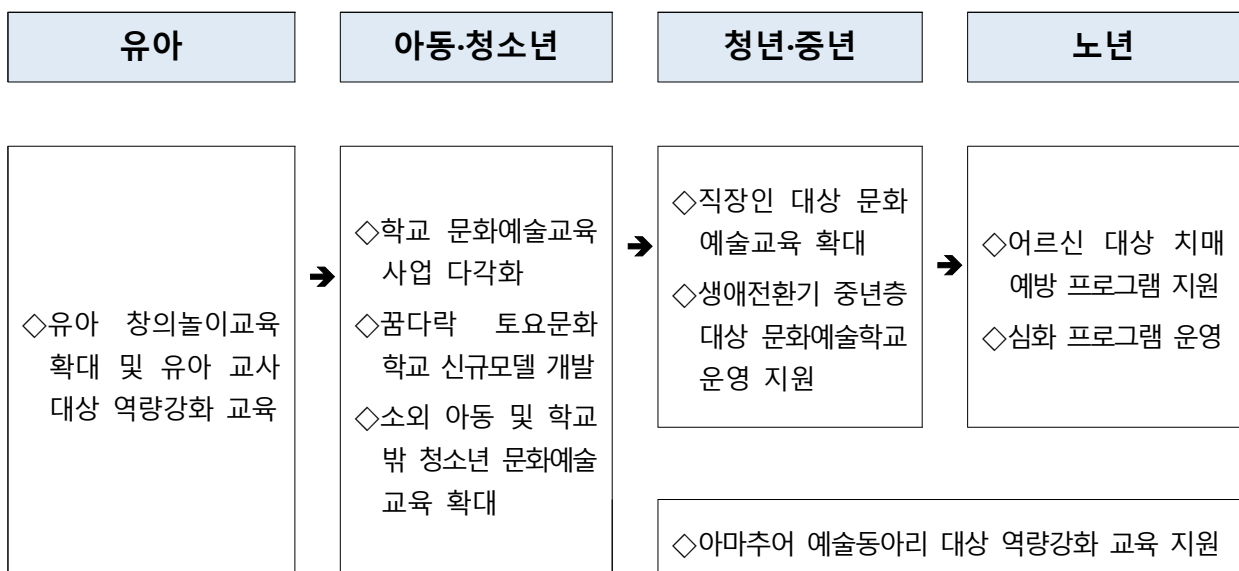
□ 전통예술 대중화 및 친밀성 제고 정책 추진

- (전통공연예술 동호인 대회) 민요 · 판소리 · 풍물 등 대학 풍물패, 문화학교 수강생 등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참가(' 20년~)
- (전통문화예술 TV 방송매체 설립) 지역에서도 전통문화예술 관련 우수 영상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문TV 설립('18.7월까지 타당성조사 연구)

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예술향유 역량 강화

□ 수요자 맞춤형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계층별·세대별 요구와 특성을 파악·내실화
 - (유아) 유아교육시설 확대 및 학부모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 등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 (아동·청소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다각화 및 예술강사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사업 운영 내실화
 - (청년·중년) 중소기업 직장인 대상 교육 기회 제공 및 은퇴기를 맞이한 중년세대의 특성·수요를 반영한 생애전환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 * ('18년) 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 6개소 운영(4.2억)
 - (노년) 어르신 치매예방 프로그램,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기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심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화
 - (일반국민)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을 통해 동아리의 예술적 역량 강화 및 문화예술 활동의 자발적 활성화를 유도, 시민예술가 양성
 - * ('18년) 700개 동아리, 8개 지역 →('19년~) 1,000개 동아리, 대상지역 확대



□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강화

-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 꿈꾸는 예술터) 아동·청소년 및 주민들이 창의적인 예술을 경험하고 창작하는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조성·운영
 - (운영내용) 유휴공간 활용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조성 및 지역 예술가·강사 등이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창·제작 및 운영
 - (지원방식)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를 통해 유휴공간과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18년 2개소 시범운영(40억)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개발)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를 개발,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강화('20년 이후)
- * 문화예술교육단체, 문화시설, 프로그램, 타 부처 문화예술교육 관련 내용 연동
-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기능 강화) 문화기반시설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상설화 및 매개인력 상주 등 추진
- * ('19년~) 신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등 추진방안 마련, 기초연구조사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

- (문화예술치유) 각종 사회갈등과 사고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 상처 회복
 - 군대 부적응 병사, 성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미술·무용·연극치유 등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지원
- * '18년 100여개 프로그램 운영(25억), 점진적으로 대상자 확대 추진
- (사회통합형 문화예술교육) 세대 갈등, 가족해체,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중심의 프로그램 지원
 -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로 구성된 프로그램, 1인 가구들 대상 협력형 교육프로그램 등
- * ('19년)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20년~) 시범운영 및 정규화 추진
- (사회 이슈 연계 문화예술교육) 예술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관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 (‘창의예술교육 랩’ 운영) 지역 소재 예술대학과 문화시설을 연계하여 ‘랩’을 구축, 새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연구개발 등 추진
-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 인문,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협업 및 문화시설 활용을 통해 콘텐츠 개발·운영
- (전문가 양성) 예술대학 졸업생 등 청년예술가들이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참여,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로 양성

《 해외사례 : 바비칸-길드홀음악대학 창의학습 - 바비칸 박스(Barbican box) 》

- 영국 공연예술기관인 바비칸 센터와 런던 시립 길드홀음악연극대학이 협력, 창의 학습프로그램 운영하고 길드홀 대학 예술전공자들을 예술교육자로 양성
- 바비칸 박스 : 학교에서의 예술창작체험을 돕는 문화예술교육 도구상자(kit)

-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질적 성장과 지속가능성 확보
- (경력개발 시스템) 전문인력 경력관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역량개발 관리	경력 관리	현장 연계
· 역량진단 및 개발 가이드 지원 · 역량 기반 학습체계(추천교육 등) · 직무별·분야별 핵심역량 진단 관리	· 학습이력 관리 · 활동이력 관리 · 상담시스템	· 지역, 분야, 직무 등을 고려한 인력 간 협업 · 현장 구인/구직

- (연수 체계화) 예술강사, 기획자 등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전문분야 특화 및 예비·신규·중견 등 경력단계별 세분화된 연수프로그램 지원 등

* 경력개발 시스템 구축 및 경력단계별, 분야별 연수프로그램 개발 → 시범 운영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연수원 연계 방안 마련

- (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원 건립 검토) 정책관계자, 예술강사, 행정인력, 수혜기관 담당자 등 연수를 통해, 교육의 질 제고(약 16,300명 추정)
- 오프라인 교육 및 이와 연계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개발, 대상별 교육현장·직무·교육과정을 고려한 교재 개발을 통해 맞춤 교육 추진

다 잠재적 예술 수요 확대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정착 및 세제 혜택 확대

- 공연관람·도서구입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정착(’ 18.7~)
 - 수요자(관객)이 보다 쉽게 공제혜택을 받도록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지정제도* 도입(공연입장권 예매/판매처, 공연시설·단체 등)
 - *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문체부 등록을 완료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공연사용분은 사용금액에 합산
 - ** 한국문화정보원 사이트에서 등록·신청,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 제공 사업자 확대(’ 18.7~), 등록·지정제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18.말~, 기재부 협조), 문체부 고시 제정 등 후속조치(’ 19)
-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 ▲미술전시 관람비 또는 미술품 구입비 등의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확대 추진(’ 19~), ▲법인 문화접대비에 소액미술품 추가, ▲상속세 물납 도입*, ▲기업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인상(현행 5백만원 → 10백만원) 등
 - * 프랑스 피카소 미술관 : 상속세로 물납한 미술품으로 미술관 설립

□ 미술의 대중화를 위한 미술품 수요 확대

- (미술품 구매 무이자 할부 지원) 5백만원 이하 중저가 미술품 구매 시, 카드 무이자 할부(최대 10개월) 지원 유도(’ 20년)
- (작가미술장터 확대) 2백만원 이하 중저가 미술품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적·실험적 미술시장을 통해, 미술품 소비 경험 확대(’ 18년)
- (작품가격 공개 유도) 작품 가격 합리화 및 가격정보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미술품 소비를 증진(’ 18년)

- (대여 활성화) 미술자원공유서비스(K-Artsharing)*를 중심, 공급자(작가)와 수요자(미술품 대여업체, 대여화랑)가 만나는 B2B시장 활성화('18년)
- * '17.10월 오픈, 작가와 화랑·대여업체·미술관을 연결하는 B2B 지원 플랫폼

□ 관객 참여/체험 형 프로그램 확대(국공립예술단체/기관)

- (공연-관람 연계) 국립극단 등의 관객과 ‘예술가(연출·배우)와의 대화’, 공연장 시설 및 무대 뒷모습 소개·체험 프로그램 발굴 (‘백스테이지 투어’, 리허설 공개, 토크콘서트, 공연장 투어* 등)
- * 예술의전당 SAC Tour(오페라극장·음악당·분장실·리허설룸 투어+무대 스태프 설명)
- (지역 상설공연·명소 활용) 장구·무용 등 전통 체험프로그램 추진 및 지역명소, 문화공간, 전통절기 등과 연계한 참여 프로그램 강화
- (예술감상 교육) 지역·학교를 찾아가는 공연, 해설을 곁들인 학교 오페라, 찾아가는 발레·연극교실 등 다양한 공연-교육 연계 프로그램 실시
- * 우수 공연, 전시 등을 중심으로 해설프로그램을 제작, 방송·온라인 등을 통해 방영

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확대

□ 장애인예술분야 연구 및 정책 지원

- (실태조사) 장애인 예술 활동 조사(빈도, 장소, 애로사항 등) 및 기존 예술인 실태조사와 비교분석 등('18.6~'19.4월)

* 실태조사에 앞서 조사범주 및 방법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시행('18.1~5월)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활동 격차(단위 %) 》

	비장애인	장애인	격 차
참여의향률	73.8	38.0	35.8
문화활동률	65.8	18.1	47.7
실제참여율	89.2	47.6	41.6

*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건립 기본계획」('14.5월/문화체육관광부)

- 공공 공연시설·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19~)

- (장애인 총서 발간) 장애인 예술 및 담론 활성화를 위해 공연·전시·교육·장애학 등 해외 학술도서 번역·발간 및 국내 연구자료 발간('20)

* 해외는 '장애 미학', '장애와 공연예술' 등 다양한 연구서를 총서로 발간

- (정책개발) '포용적 예술' 등 새 가치 발굴을 위한 장애인예술 연구('19)

- 문화다양성, 문화적 평등, 포용적 예술 관련 기초연구 및 정책개발

* 영국예술위원회는 2015-18 중장기 전략에서 문화다양성을 주요의제로 채택, 개념연구, 사례조사, 기초연구, 사업개발, 기금지원 등의 정책체계 실행 중

- 장애인예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현장 정책개발('18~)

- (문체부내 장애인예술 정책 전담부서 신설) 장애인예술 접근성 제고, 창작-향유-유통의 선순환 촉진, 이해관계자 간 및 민관 협업 강화 등 장애인예술 정책·지원 강화

□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성 강화

- (통합정보지원 시스템/공유플랫폼 구축)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문화 예술 정보와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정보 사이트 구축('18~)
 - 장애인 특화 서비스 콘텐츠* 및 쌍방향 정보** 제공
 - * 공연·전시 맞춤형 정보서비스, 배리어프리/시청각 장애인 콘텐츠 및 웹진 등
 - ** 장애인 참여로 만드는 극장 및 전시장 접근정보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1인 크리에이터 영상콘텐츠 연계 플랫폼 구축 등
- 저작권·향유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예술 전용공연장 조성
 - (구성) 장애인의 원활한 참여를 위한 배리어프리 무대·객석 및 장애인에게 필요한 멀티미디어 공연이 가능한 환경 조성
 - * 약시장애인을 위한 모바일·VR기기 허용, 휠체어석 우선배치가 가능한 가변객석 등
 - (일정) 전문가 의견수렴('18), 타당성 및 리모델링 방안 연구('19), 리모델링 공사('20~'21) 및 개관('21년 목표)
- (지원사업 확대) 문화예술 접근성 보장 가이드 북 제작, 접근성제고를 위한 서비스 다각도 지원, 장애문화예술 인식개선 교육 실시 등('19~)
 - * (예) 전시장 수어통역서비스, 공연장 공연자막 제공, 점자 안내문 배포 등

□ 장애예술 특성화 지원 및 인력 육성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특성화 창작거점 구축
 - (거점 마련) 공공분야(지자체, 문화재단, 유관기관 등) 장애 예술인의 창작·향유·교류·교육이 이루어지는 복합공간 조성(지자체 유휴공간 활용)
 - (특성화) 공예, 디자인, 융합예술 등 지역별로 활성화된 예술분야와 연계하여 전문예술인력 집중 육성
- 청년 장애예술가 양성 사업(Slow Arts Factory) 추진
 - (내용) 예술·기술·산업이 융합된 공방 중심의 복합창작공간을 기반으로 생산·유통을 결합, 창작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 (구성) 공연·전시·교육, 레지던시, 작업실, 커뮤니티, 예술상품 매장 등
 - * 일본 '굿잡센터'(장애예술가 작품 수집 및 유통망 마련) 등 우수사례를 참고

○ 장애인예술교육 교재개발 및 전문가 육성

- 발달장애 대상 예술교육 교재개발(' 19~), 매개자 및 교육자 육성(' 20~)
- 문화예술교육과정 내에 장애인 예술교육과정 연계(' 20~)
- 복지관 및 문화시설 연계 상주 예술교육가(매개자) 파견 지원(' 21~)

○ 장애-비장애 예술인 교류·협업 확대 지원('20~)

- 장애-비장애예술가 협업프로그램 및 국제 공동창작 지원
- 국내외 연수, 교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강화
- 장애인 예술활동 기획자, 매개자의 국내외 교류 등 활동 지원

○ 유망 예술인 및 신진 장애인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

- 신진 예술단체 공모사업 참여기회 확대 제공(' 19~)
- 지역 연계 관계망 구축으로 지역 예술주체·단체의 활동 지원, 장애인예술 지역 활성화 유도(' 19~)
- 정부미술은행 장애인 작품 구입 확대(' 19~)

○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 정상적 교육 기회를 갖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 전문 예술 활동에 참여시키고 자립기회 마련
- 음악, 무용, 미술, 실용음악, 전통음악 등 5개 분야 운영

□ 장애예술 남북교류 및 국제적 관계망 확대

○ (남북교류) 심포지엄, 상호 방문공연 등 장애예술인 및 단체 간 교류 지원

○ (국제협력) 국제장애예술단체와의 관계망 구축 및 협력강화

- ▲국제장애인예술주간 개최, ▲국제 심포지엄, 라운드 테이블, 워크숍, 공동제작 등 교류의 장 활성화, ▲장애예술인 ODA 사업 등 추진
 - ‘장애인문화예술축제’의 성장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협력 지속
- * 싱가포르 ‘예술과 장애 포럼’, 영국 ‘Unlimited Festival’ 등과 네트워크 지속 확장 및 도쿄올림픽(2020), 북경패럴림픽(2022) 등을 통해 한국 장애인예술의 위상 확대

나 다양성 예술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소수자/다양성 예술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 소수자 예술활동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의 핵심적 자원이라는 인식 하에, 소수자 예술인 활동 현황, 정책 수요·방향 연구 추진
 - * 소수자 예술인 접근성 제고, 네트워크 확대 및 창작지원 등 점진적 사업 발굴

· 국내 체류 외국인 205만명으로 주민등록인구(5,170만명)의 약 4%(법무부, 통계청)
· 등록 장애인 251만명('16.2월), 북한이탈주민 3만 1,530명('18.3월, 통일부)
· 다문화 가구수 316,067가구/ 전체 19,367,696가구('16년말, 통계청)

- 문화누리카드 예술분야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강화, 소수자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제공

□ 이산(디아스포라)문학 활성화

- 이산문학 지원 범위 확대 및 활성화 기반 마련
 - 단순 교류 지원을 넘어 문학 활동으로 확대 지원
 -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기초연구('17~'18) 및 해외 한인문학 DB 구축, 아카이빙 추진('19~/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운영과 연계)
- 이산문학인의 창작 및 이산 민족 문학향유 활성화
 - 작품 창작·발표 활성화 지원 및 문예지, 동인지 출판 지원 추진
 - 대상별 특화된 문학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강사과전 포함)
- 이산문학 이해 증진 및 가치 재발견을 위한 교류·협력 확대
 - 세계한글작가 대회('15년~) 등 한글/이산문학가와 국내 작가와의 국내외 교류·협력행사 지원

가 예술시장 및 유통 활성화

□ 공정한 예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 구축

- (표준계약서 확산) 공연예술·미술 등 장르별·직종별 개발·보급 지속
 - *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발 현황 : 총 7개 분야 32종 개발·보급
 - (개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용역, 근로) 개발 세분화 및 보급(' 18.하~), ▲미술 표준계약서 6종 개발 및 시범 적용(' 18년)
 - 정부 지원사업 사용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19년)
 - (교육) 세분화 및 교육과정 확대(' 17년 1,623명/34회→' 20년 3,000명/60회)
- (서면계약 실효성 제고)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3의 서면계약 작성의무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권 신설 등 추진
 - * 서면계약의무 및 벌칙조항은 있으나, 이행 파악을 위한 조사의 법적근거는 없음
 - 문체부-고용부 합동으로 대형 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서면계약 (근로계약) 체결 준수 여부 현장 점검(' 18년~)
 - 서면계약 미체결 신고접수 창구 마련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 18년~)
-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위한 제도 개선) 행정적·법적 기반 확충
 - 예술인복지재단의 공정상생지원센터* 기능 및 신고채널 확대(' 18년~)
 - 전문 컨설턴트 매칭 및 원스톱 지원(서면계약 상담, 피해구제, 심리상담)
 -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창구 확대(' 17년 6개 → ' 20년 15개 협·단체)
 - * 상담예약(전화, 온라인) → 센터 방문 → 상담/피해구제(법률상담, 신문고 접수)를 통한 시정명령, 소송지원, 조정 등) → 사후관리(심층상담, 교육 지원 등)

-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불이행시 제제조치(불이행 판단기준, 절차 등) 구체화 및 문예기금 등 정부 재정지원 배제 법적근거 마련(' 19.상~)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18.하)
- * 화랑·경매업·미술품감정업 등록제, 기타판매업 신고제 도입 등

□ 예술유통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객관성 제고 및 활용 확대

- 공연·예매정보 수집(기획·제작사, 입장권 판매자, 시설 운영자 등 대상), 전산망 운영기관 지정 등 법적근거 마련('19.상, 공연법)
-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공연예술 시장 정보를 제공, 관객, 민간 투자, 제작 활성화 및 시장통계에 기반 한 데이터분석·활용 확대

○ 공예 유통망 개선 및 공공부문 수요 창출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기념품 수요와 공예사업자를 연계하는 B2B/B2G 활성화 프로그램을 도입, 소량생산-소량수요 체계를 수요집적-수요대응형 생산체제로 전환(' 19년)
- KCDF 갤러리 등 공예 상설전시판매장 개설 확충(3개소, ' 19년)
- 공예품 이력관리제를 통해 공예가와 공방 이력 DB화(' 20년)
- 공예품 품질보증시스템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 22년)

○ 미술은행 기능 확대를 통한 시장기반 구축

- 해외 대여 확대, 지역미술은행 설립 및 공공수장고 운영 지원
- * (해외사례) 佛 국립현대미술기금(FNAC), 지역현대미술진흥기금(FRAC)
- 미술 전문 보험상품 출시 등 미술품 보험제도 개선 지원
- 작가 등이 은행에서 미술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미술은행 등에서 보증하는 방안 검토(' 20년)
- * (예)기술보증기금 : 문화산업완성보증, 기술담보보증, 동산(기계설비 등) 담보보증 등

□ 예술 투자 확대

- (공연 제작비 세액공제) 공연 작품 제작비에 대한 10% 상당의 세액 감면(소득세 또는 법인세)을 통해 공연 제작 및 투자 활성화(기재부 협의)

- 감면대상 : 시나리오 제작비, 연출·배우·스태프 인건비 등

《 제작비 세제지원 유사사례 》

- (국내 : 영상콘텐츠 제작비) '16년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도입(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 (해외 : 공연 제작비) '14년부터 '창조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연극·뮤지컬·무용 등 '공연 제작비 세금 감면(20%~25%) 제도를 도입 시행 중

- (미술 투자활성화 지원) 문화 분야 모태펀드를 활용한 아트펀드 구성 및 연기금 등의 투자 대상에 미술품 추가방안 검토

* (해외사례) 영국철도 연금관리공단(British Rail Pension Fund) : '74~'80년 구입 (£ 4,000만/2,424점 구입) → '87~'99년 처분(평균 연 수익률 13.1%)

- (청년 공연 투자) 연극·청년작품 등 다양한 분야로의 투자 확대

* 65개 내외 공연 투자 시, 1,410명 고용지원 효과(공연 평균투자액 4.3억원, 단체 평균종사자 수 21.7명 가정)

- (소액투자 활성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과의 연계 지원

* 펀딩 상품설계를 위한 컨설팅,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및 펀딩 플랫폼 수수료 지원/ 투자자 대상 예술교육·워크숍 진행, 투자자-제작자 매칭 등

** (사례 : 뮤지컬 미드나잇, (주)모먼트메이커) 59명 투자로 목표액 3천만원의 95% 달성

□ 문화예술 후원 확대

- ('메세나 전국망' 구축) 광역단위 신규 메세나단체 추가 설립 및 지역 메세나 단체 협의체 운영으로 메세나 활동의 전국적 확산 유도

* 지역 메세나단체 현황 : 경남메세나협회, 제주메세나협회, 대구메세나협의회)

- 문화접대비 활성화 및 기업 문화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 문화 예술지원 사업 공동 추진(권역별 세미나 등 홍보사업)

-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확대) ▲Arts&Business 결연*, ▲예술지원 매칭펀드** 및 ▲광역문화재단과 지역 소재 기업·예술단체가 연계한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사업의 전국적 확대 추진

* 대기업-예술단체가 1:1로 결연, 지속적 파트너십 구축(문화마케팅·경영 차원의 예술후원)

** 중소·중견기업의 예술단체 지원액에 비례하여 문예기금을 예술단체에 추가 지원

《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성과 》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	'14년	'15년	'16년	'17년
결연건수	17건	48건	63건	...	197건	126건	195건	200건
문예기금	-	620	600	...	1,800	800	1,700	1,700
기업지원액	1,465	2,450	2,729		5,464	5,281	7,057	6,012

□ 예술시장 분석 강화

- (미술 통합아카이브 구축) 공공수장고 보관 작품과 연계, 통합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21년), 연구·감정·저작권 보호 등 기초자료로 활용

* 국립현대미술관, 예술경영지원센터 전작도록·원로작가 디지털아카이빙 사업,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코리아아티스트 프로젝트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됨

** (해외사례) Art UK : 공공소유 작품을 사진기록으로 보관(21만개 사진 보유)

- (실태조사 강화) 공연·시각예술실태조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사의 법적근거 마련 및 세부장르별·해외·소비자 등 세분화·정례화('20~)

* 조사지표를 공급-수요, 창작-유통-소비(향유) 가치사슬 관점으로 재구조화

** 장르별 조사에서는 제작비, 개런티·인건비, 소비자 수요 등 시장 진단에 필요한 지표 추가 조사, 이후 비용구조 분석 및 시장분석 연구 확대

- (전통예술 아카이브 연계) 유관 기관*별 구축된 자료 체계화 및 연계를 위한 온라인 공동 플랫폼 구축**('19년~) 등 관리·활용 강화

- 국악, 전통무용 등의 음원·영상·자료를 체계적·다각적으로 관리·활용하여 조사·연구 촉진, 응용콘텐츠 발굴 등 전통예술 가치 확산

* 국립국악원(디지털 국악아카이브), 국립중앙극장(공연예술박물관), 문화예술위원회(예술자료원),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 등에서 개별적으로 아카이브 구축

** 유관기관 아카이브 DB 연계를 통한 (가칭)「문화예술 아카이브 온라인 공동 플랫폼」 구축 및 이용자 대상 통합 검색·활용서비스 구현

나 혁신적 예술시장 환경 조성

□ 예술 기반 사업 개발 및 창업 지원

○ 청년 예술인의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지원

- 아이디어 발굴(예술해커톤*) → 사업화 개발 지원 → 창업 시 안정화 자금 지원(단계별 전문가 멘토링·컨설팅, 창업·투자 전문기업과 연계 지원)

* 예비창업팀-전문가 멘토로 구성된 10개 내외 팀이 1박2일 동안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기획 및 발표하고, 우수팀 시상

< 2017 예술해커톤 창업아이디어 발굴 사례 >

낭만EAR(최우수)	Magic's LAB(우수)	8282(우수)
		
거리예술가들을 위해 소리를 인식하는 결제시스템	관람객의 시선과 기호에 맞춰 물리적으로 변화하는 전시환경	비콘 기반 챗봇 도슨트 시스템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및 경영활성화 지원(' 19~)

- ▲초기) 경영 코칭, 사업 모델 개발비 및 경영 안정화 자금 지원, ▲성장기) 판로확대 및 투자연계 컨설팅, 사업개발 지원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20~)

* 비즈니스 매칭 지원, 공공구매 시장 연계 상품·서비스 개발 컨설팅 등

○ 예술 창·취업지원센터 설치 추진

- (창업지원) 청년 창업상담, 단계별 멘토링, 사업안정화 지원, 전문가 매칭 등

* 기존 예술경영컨설팅, 예술경영아카데미에서 창업영역 확대·세분화 운영

- (취업지원)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 등과 연계, 일자리 정보 제공 (일자리정보플랫폼), 구인구직 매칭 및 취업컨설팅·포럼 등 운영

* 기존 예술경영지원센터 일자리정보 게시판 활용, 확대

○ **예술시장 전문화·분업화를 위한 예술기획사 육성**

- 예술작품 창·제작 외에 기획·유통·국제교류·홍보·투자유치 등을 전담하는 분야별 전문기획사 육성 (' 17~' 18년 18개→ ' 22년 58개)

○ **예술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및 부가가치 창출**

- 예술작품을 활용한 머천다이징(MD) 개발 및 국내외 유통 판로 지원

(주)문화공작소 상상마루	(주)시스플래닛	(주)아라리오
		
창작뮤지컬 <캣조르바> 캐릭터를 활용한 주얼리 뱃지 책갈피	발달장애 작가의 작품을 활용하여 제작한 가방, 파우치	권오상 작가 작품을 활용하여 제작한 트래블키트(목배개 인대휴대폰케이스)

- **우수 공연작품의 영상*·출판·음원 제작** 및 유통 지원**

- * 예술단체와 영상제작·촬영사를 매칭하여, 영상 VOD 제작 및 제작물의 동영상 플랫폼 게재 등 유통을 지원
- * 한국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협력, 음원·음반의 등록·유통·판매 지원

• (주)라이브의 뮤지컬 '팬레터', '16년 최초 전막 생중계로 11,729명 온라인관객 유치 성공 • 2016창작산실우수신작 뮤지컬레드북은 누적 13,756명이 중계감상, 전막 중계 이후 다음날 인터파크 일간 랭킹 2위 차지
--

□ **예술분야 매개인력 지원 확충**

○ **(예술경영아카데미 운영) 예술콘텐츠 유통 전문가 대상 단계적 교육프로그램 운영(기획제작, 기획유통, 자원조성 등)**

- * 전문역량 진단, 기초/중급/고급 등 단계별 맞춤 및 현장 수요 중심형 교육

○ **(미술) ▲작가를 발굴·육성할 수 있는 중소화랑 육성(전속작가제 지원금,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등), ▲화랑·경매 등 시장 매개인력 양성(' 18년), ▲미술품 감정교육 및 감정사 자격제도 도입(' 21년)**

○ **(공연예술) 예비/청년 기획인력의 해외 축제, 공연장(제작·유통 플랫폼) 등 진출 지원 추진(연수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연수 추진)**

- (대상) 문화예술 관련분야 학사 또는 석사 졸업자(3년 이내) 등 예비 인력 및 34세 이하 청년 인력
- (내용) 체재비, 프로젝트 개발비 및 수행경비 지원

《 해외 사례 》

- (스페인 CultureX) 35세 이하 대상 문화경영 실습 및 6개월 연수 지원(체재비)
- (일본 신진예술가 해외연수 제도) 20세 이상 신진예술가 및 프로듀서 등의 1~3년 단위 해외대학 및 예술단체 연수 지원(체재비 지원)
- (프랑스 작가지원 제도) 가능성 있는 젊은 작가를 선발, 해외 프랑스 문화원에서 활동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1년 간 지원

- (지역 공공 공연시설 종사자) 우수 공연작품·예술단체 소개 및 관람·체험형 교육, 공연기획 노하우 등 정보 공유 강화, 워크숍·포럼 개최
 - * 국공립 교육프로그램, 한국문예회관연합회 아카데미 및 지역문화재단 프로그램 등 연계
- 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시설 종사자 간 공연정보 공유, 교류를 위한 플랫폼 운영 및 실질적 네트워킹 강화(아트마켓, 축제 등 활용)

《 영국 : 스코틀랜드 극장협회, 에딘버러 페스티벌 등 플랫폼 활용 》

- (자료 DB, 정보공유) 스코틀랜드 극장연합 회원사 극장 및 스코틀랜드 공연단체 작품 소개 자료집, 작품 공연영상 DVD,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Made in Scotland" 프로그램 일환으로 작품 선정, 홍보, 에딘버러 참가 및 해외진출 지원 등)
- (에딘버러 페스티벌 연계, 네트워킹 강화) 우수 공연단체·작품, 축제 참여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사전 네트워킹 희망수요를 파악, 1:1, 1:다수 매칭 프로그램 운영

다 교류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확대

□ [공연예술] 전략적 교류 확대 및 국내 아트마켓·축제의 재정립

- 지역별/권역별 거점역할을 할 기관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 확대
 - * 국제기구(EU), 국제기구 프로젝트 산하 예술가·단체·기획자 네트워크(Music Moves Europe 등), 무용·오페라·음악 등 장르별 전용극장 등
- 국내외 예술가·단체·기획자 간 공동 조사, 워크숍 등의 지원 강화로 인적교류, 기관 간 교류와 해외시장 진출을 연계
 - * 예술경영지원센터 KAMS Connection, 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공동기금 지원 사업, 지역 레지던시 등을 통한 인적교류 및 국내외 기관 간 교류

- 국제교류, 시장 진출 플랫폼인 국내 아트마켓·축제의 운영방향 재설정
 - (서울아트마켓) 전략적 집중 교류, 참여 확대 및 상생모델 구축
 - 내실화를 위해 일정기간(1~2년) 특정 국가·지역과의 협력 집중 지원 및 해당 국가·지역의 거점기관 네트워크 활용 등 역할 강화*
 - * (예) 아트마켓 참가팀 추천, 네트워킹 프로그램 기획단계에 일정부분 참여 등
 - 참여확대를 위해 프로그램 개편(참가작·단체 소개·홍보 방식 등)
 - * 쇼케이스 공연(무료), 아트마켓 관계자 중심 → 전막 공연(유료) 추가, 일반관객 참여 확대
 - 국내 공연시설, 축제, 장르별 기관과의 협력·상생모델 구축
 - * 서울국제공연예술제(축제), 무용 축제, 서울지역 거리 축제 등과 연계
 -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운영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예술감독제 도입 연계 검토('19년~)

□ [미술] 비엔날레·아트페어 평가 등을 통한 국내·외 교류 활성화

- (평가체계화) 비엔날레, 아트페어의 관리와 질적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18년)
- (레지던시) ▲개인 지원에서 기관 중심 교류 사업으로 확대, ▲외국 작가·큐레이터 등이 국내 레지던시에 참여하여, 국내에서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대상 확대('20년)
 - * (예) 한국 아시아문화전당(ACC) - 네덜란드 Rijksakademie Dialogue and Exchange
- (전시) ▲한국 작가, 작품의 해외 미술기관 전시비용 지원('18년), ▲중소화랑(매출액 1백억 미만) 중심으로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18년)
- (출판) ▲한국미술 총서(총 50권), 한국작가 소개자료집(매년 10명) 발간('18년), ▲‘단색화’ 등 한국미술 고유용어(2천여개)의 영어·중국어·일어 번역에 대한 표기법, 설명 가이드라인 마련('22년)
 - * (예) 「Conflicts, Innovations and Interactions: Korean Art from 1953」 (英 파이돈 프레스와 출판 계약, '20년 출판 예정) 등 한국미술 개론서 해외출판 지원 중

□ [문학]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 확대

- 한국문학 전문 번역인력 양성을 위한 ‘번역아카데미’ 운영 확대
 - 번역아카데미-해외 주요 대학 학점교류(’ 18년 2개 → ’ 22년 5개 대학), 원어민 신진번역가 발굴을 위한 초청연수(’ 18년 6개 → ’ 22년 10개 대학)
 - 아카데미를 수료한 신진 번역가를 고급 전문번역가로 양성하기 위한 고급 양성 과정 운영(신진-기존 전문번역가 간 멘토·멘티 프로그램, 해외출판인 초청프로그램 등)
- ‘서울국제작가축제(’ 06~)를 우리나라 대표 국제문학축제로 개최
 - 격년제 → 매년 개최로 확대 및 국내외 저명작가 초청,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한국문학의 해외 인지도 제고
 - * 문학콘서트, 작가 라운드테이블, 작가 대담, 지역 문학기행 등
- ‘한국문학정전’ 및 한국문학 담론 형성을 위한 이론서 번역·출간
 - * 한반도 강역 내 및 해외 동포에 의한 한국어 문학, 한국적인 것을 다룬 이민 2·3세들의 현지어 문학 등을 아울러 100편의 작품 수록
- 번역가 레지던스 ‘한국문학 국제교류센터’ 건립 추진
 - 국내외 작가, 번역가가 공동번역 작업을 진행하며 네트워크를 구축
 - 한국문학 상시 소개 프로그램을 통해 복합 문학교류의 장으로 활용
 - * 독일 베를린문학콜로키움(LCB), 스위스 번역가의 집(Translation House Looren) 등

8 예술의 미래 가치 확장

가 과학기술 융합을 통한 예술의 가치 확장

□ 예술과 기술·과학 융합 마당 조성

○ 기술혁명 시대의 예술적 상상 촉진 지원

- 예술이 과학기술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예술이 ‘사람’을 위한 기술혁명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가칭) ‘미래상상페스티벌’ 개최

* “예술은 기술의 발전을 이끌고, 기술은 예술에 영감을 불어 넣는다”(존 라세터)

○ 예술-기술 융합 커뮤니티 활성화, ‘융합랩’ 운영

- 예술과 기술 융합 아카데미 운영 및 전문가 매칭 컨설팅 지원

*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한 혼합형 교육(Blended Learning) 체계 마련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과 예술을 융·복합하여, 현대미술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

* 구글은 Art&Culture Lab을 통해 아트 팔레트(Art Palatte), 모마 툴(MoMA tool) 등 IT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새로운 문화프로젝트를 개발·보급 중

○ 첨단 융합공연 활성화 기반 마련

- (공간제공) 융복합 공연 및 기술(VR·홀로그램 등) 관련 기업, 창작자 대상 입주 공간 및 융합공연 시연 기회 제공(홍릉 콘텐츠시연장)
- (제작지원) 융합공연 프로젝트 시연을 위한 첨단장비 대여, 쇼케이스, 비용 지원 등(’18년 8개 내외 프로젝트 예정)

○ 예술·기술융합 협업 프로젝트 연결·확산 네트워크 지원

- 공공·민간의 예술-기술 융합 프로젝트를 연결, 예술-과학기술 융합 전시, 공연, 페스티벌을 연계, 공동 브랜딩 및 통합 시즌제 운영

* (사례) ▲한예종 융합예술센터 창작지원, ▲서울문화재단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과학창의재단 ‘과학융합형 문화예술콘텐츠 개발사업’, ▲현대자동차 ‘Zer01ne’ 등

□ 예술분야 R&D 지원

○ 예술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담론 형성 및 연구개발 지원

- (로드맵 작성) 예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연계를 위한 공연예술, 미술, 공예, 공공디자인 연구개발(R&D)위원회 구성('18년) → 연구조사 및 계획 발표('19년)
- (문화기술 연구개발 연계) 발굴된 과제를 문화기술 연구개발과 연계
 - * 문화기술 연구개발(R&D) :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17년 예산 732억원
 - ** (예) 위작 감별 관련 과학기술, 디지털 저작도구 개발, 한국 고유 색채 체계 정립, 관객/객석/무대기술/공연장 안전 관련 기술개발 등

《 해외 주요사례 》

-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는 '12년부터 영국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NESTA), 예술·인문연구지원회(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 AHRC)와 공동으로 '예술분야 디지털 R&D 기금'으로 예술과 디지털 기술 분야 간의 협업을 지원
- (미국) UT Dallas는 2004년 Arts&Technology 프로그램을 도입, 과학자, 공학자, 예술가들이 협력하여 실험적 R&D 모델을 개발토록 하였으며, Arts& Technology 센터를 건립

○ 국악기 개량 및 국악 음향 연구개발 지원

- 단편적 악기개량을 넘어, 개량 악기 활용 작곡·실연 및 북한 전통악기 연구·개량까지 확대하여, 전통음악의 대중화·세계화 기반 마련

나 실험과 도전, 협업의 새로운 예술 공간 조성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및 활성화

- 폐산업시설인 당인리 화력발전소(우리나라 최초 화력발전시설)를 예술과 산업의 융합 확산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22년 개관)
- 제조업 등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쇠퇴하는 산업시설의 문화재생 모델로서 실험·개발, 에너지·기술·제조업 등 타 영역과 예술의 만남 촉진

□ 서계동 복합문화예술시설 건립 추진

- 현 국립극단 부지(서울시 서계동 일원)에 실험적 창작과 향유, 예술인 간, 예술인-관객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예술공간 조성
 - (공간구성) 대·중·소 공연장 및 업무, 소통 공간, 관객 체험시설 등
 - (기대효과) 공연예술 창작·향유 활성화 및 생산 유발, 고용 확대
- *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생산유발효과 2,308억원, 취업유발효과 1,917명

구 분	공간구성(안)
공연시설	- 대극장1(복합장르/1,200석), 중극장1(연극/500석), 소극장3(어린이, 실험, 청소년/100~300석)
복합시설	- 네트워킹 공간, 체험시설, 아트팝업스토어, 업무시설 등

* 「서계동 복합문화관광시설 조성사업」 예타 조사보고서('15년, KDI)

□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 한국문학 유산 및 원본자료의 수집·보존·활용을 통한 문학진흥의 핵심거점이 될 국립문학관 건립('21년 개관목표/ 문학진흥법 제18조)
 - 지역문학관과의 연계·협업으로 전국의 문학 균형발전 구심점 역할
 - 설립추진위원회 및 자료수집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시설 건립, 운영계획 수립, 자료 수집 등 건립을 문학계와 협력·추진
- * 사업기간 : '18~'21/ 시설 : 수장고,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열람·편의시설 등

□ 파주 무대공연예술종합아트센터 건립

- 국립극장, 국립예술기관/단체 등의 무대용품 보관 수요 대응 및 무대용품 공유·활용 촉진('18년, 총사업비 확정 및 설계 등 추진)
- '제작→공연→(보관)→ 폐기'의 일회성 활용체계를 '재활용/재제작/대여/공유' 등 생산적 활용체계로 전환
- 제작비 간접지원 등의 경제적 효과 및 공유경제 활성화 기대
-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주요시설 : 무대용품 보관·제작, 전시·교육 시설

다 예술을 통한 문화교류와 협력 확대

□ 예술을 통한 문화외교의 전략적 확대

○ ODA 대상 국가의 전통예술 발굴, 전승 및 보존활동 지원

- 문화협력 체계 구축 및 보존가치와 훼손 위험이 높은 전통예술의 발굴·보존 지원

* 예) 유네스코 아리랑 상을 통해 '01년 필리핀 '이푸가오족 후드후드 송가', '03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카 피그미족 구전음악'의 전승·보존활동 지원

○ 문화예술교육 ODA 확대 및 전문가 교류

- 문화예술교육자를 개발도상국에 파견,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지원 및 현지 교사 등 대상 교수법 교육

* '18년 베트남·인도네시아 운영(2억) →아프리카·남미 저개발국가로 확대 추진

- 개발도상국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초청, 예술을 체험하는 '아트 드림캠프'를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legacy) 사업으로 확대 운영
- 한중일 문화예술교육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교류·협력 확대

* 제 5회 국제예술강사대회(ICTA5), 국제연구네트워크(UNITWIN) 등 한국 개최

○ 한국예술종합학교 AMA(Art Major Asian) 장학 사업 확대

- 아시아 ODA 수원국의 청년예술인재를 한예종 국비장학생으로 선발, 학·석사 과정 이수 지원

* 네팔·라오스 등 20개국 연 15~20명 선발, 등록금·생활비·의료보험 등 지원('05~'17, 263명 입학 및 151명 졸업)

○ 재외 한국문화원 역량 강화 및 협력사업 확대

- 문화원에 공연전시 기획자를 파견, 활용하여 실질적 매개기능을 담보

□ 풍성하고 질서 있는 남북예술교류

- 예술이 지닌 화합과 소통, 공감대 형성의 가치가 남북교류의 장에서 빛나도록, 민간·정부 차원의 예술 교류 재개 및 정례화 추진
- 예술로 남북교류가 더욱 풍성하고 활발해져, 남북 평화의 물고를 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별 교류를 적극 지원

《 예술 현장의 남북교류 제안사항들(예시) 》

- (공연예술) 남북 교차 공연, 작품 공동제작, 국내외 합동공연 등
 - 남북 합동 오케스트라 공연 및 유스 오케스트라(청소년 음악캠프 등)
 - 국립발레단-평양무용대학 발레무용학부 교류 및 합동공연
 - 창작뮤지컬 공동 제작, 대한민국연극제에 북한 극단 초청 및 국제연극제 공동 개최
- (전통공연예술) 공동연구, 자료수집 및 보전 등 교류협력 추진
 - 한민족 아리랑 대축제 및 한국민속예술축제 60주년 행사 공동 개최 등
 - 북한 지역 고악보 등 국악유물 자료의 조사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공동연구 심포지엄 개최, 교차방문 공연 정례화 추진 등
 - (가칭)‘한민족 예술자료관’건립으로 남북 원로예술가의 구술채록, 한민족 전통 예술 기록수집 등 조사, 자료 수집·보존 및 서비스 제공
 - * (구성 예시) 한민족 예술아카이브, 한민족 예술자료실·전시실(일반 열람), 남북 전통공연예술 연구소 등
- (문학) 민족동질감 회복을 위한 남북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
 - 남북작가 합작 문예지 ‘통일문학’ 복원 발간 추진
 - * ‘06년, ‘6.15 민족문학인협회’ 결성, 3호 발간 후 중단(‘08.2월 ~ ‘09.3월)
 - ‘05년 이후 중단된 남북작가대회의 재개 및 정례화 추진
 - *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05.7월/평양, 묘향산, 백두산 등)
 - 남한 내 북한 문학 이해 제고 사업 발굴 및 추진
- (미술) 비엔날레, 남·북한 근현대 미술사에 대한 비교 연구, 출판, 세미나 등
 - 베니스 비엔날레, 평양-광주 비엔날레, 남북한 건축비엔날레 등
 - 남북작가의 공동 미술전시 등 남북한 미술 교류전 추진

V. 향후계획

- 본 계획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예술 환경 변화, 현안 발생 등에 따라 보완·조정되는 향후 5년간의 예술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 계획에 포함된 과제는 예술계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추진

- 과제별 성격에 따라 단·중·장기별로 나누어 추진하되 최대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후속조치 추진

- 예산·조직·인사·법제 등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조정하여 추진

- 과제 추진상황에 따라,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
 - 진행 중인 소관과제의 완료시 또는 주요 계기별로 정책의 성과를 국민과 수시로 소통·공유

VI. 추진일정

추진과제		2018	2019	2020	2021	2022
1.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 인권 보호						
가) 예술표현의 자유 및 예술가 권리보장 기반 마련						
	(가칭)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예술가권리보장을 위한 기구 설치					
	권리 침해행위 구제 및 시정조치 시행					
나) 예술계 성평등 문화 실현						
	여성대표성을 반영한 예술정책 추진					
	예술계 성차별·성폭력 금지 법제화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운영					
	성차별·성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추진					
2.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가) 국민이 신뢰하는 위원회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혁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제외 추진					
	위원장 호선제 도입 및 위원 선임제도 개선					
	문예기금의 안정적 재원 유입구조 확보					
	장르별·기능별 소위원회 구성					
	사무처 일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					
	옴부즈만 제도 확대 및 외압 신고제 도입					
나) 문화체육관광부 역할과 기능 조정						
	문체부-예술위 협약 체결					
	(가칭)예술인권리과, '장애인 예술정책 전담 부서' 등 신설					
다) 공공예술지원기관의 공공성 회복과 전문성 강화						
	공공예술지원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추진과제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공예술지원기관장 선발방식 개편					
	공공예술지원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					
라) 협치체계 구축 및 법제 정비						
	예술정책/예술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예술 분야 법체계 정비					
3. 예술 가치 중심의 창작 지원						
가) 예술활동의 지속성·자생성 강화						
	예술 창작 대가기준 마련					
	전문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					
	창작산실 사업 개편					
	전통예술 창작 거점공간 조성					
	시각예술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비평 및 다원예술 지원					
나) 경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인력양성						
	‘생애 처음’ 등 예비/신진 진입 경로 확대					
	예술인력 양성 및 신직무군 창출					
	예술대학에 적합한 평가기준·체계 마련					
다) 지역 공공 공연시설 운영 혁신 및 민간 협력 강화						
	지역 공공 공연시설 운영 혁신					
	방방곡곡 문화공감, 상주단체 지원사업 등 개편					
4. 예술인의 삶을 지키는 복지						
가) 예술인 직업 환경 및 복지제도 개선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현황조사					
	예술인-사회 협업 확대를 위한 인문·노동 교육					
	현장예술인 맞춤형 교육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개선					

추진과제		2018	2019	2020	2021	2022
나) 예술인 사회보장 확대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 산재·사회보험 제도 개선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조성·운영					
다) 예술인 생활 지원 확대						
	예술인 복지금고 도입					
	문화예술인 패스 개편					
	예술인 창작·주거 연계 및 의료비 지원					
5. 모두에게 열려있는 예술 참여 환경 조성						
가) 일상에서 누리는 예술 향유 여건 조성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생활체감형 공공디자인 확산 및 건축물 미술품 제도개선					
	공연예술 축제·경연대회 개선					
	전통문화예술TV 방송매체 설립					
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예술향유 역량 강화						
	수요자 맞춤형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꿈꾸는 예술터 조성·운영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 개발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사회통합형 문화예술교육					
	창의예술교육랩 운영					
	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원 건립					
다) 잠재적 예술 수요 확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정착 및 세제 혜택 확대					
	미술의 대중화를 위한 미술품 수요 확대					

추진과제		2018	2019	2020	2021	2022
6.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						
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확대						
	장애인에술분야 연구 및 정책 지원					
	장애인에술 전담부서 신설					
	장애인 문화예술 통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장애인에술 전용공연장 조성					
	권역별 특성화 창작거점 구축					
	청년 장애예술가 양성 추진					
	장애인에술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 강화					
나) 다양성 예술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소수자/다양성 예술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이산(디아스포라) 문학 활성화					
7.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 환경 조성						
가) 예술시장 및 유통 활성화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확대					
	예술계 공정상생지원센터 기능 확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예 유통망 개선 및 공공부문 수요 창출					
	청년 공연 투자 확대					
	문화예술 후원 확대					
	공연·시각예술 실태조사 강화					
	미술 통합 아카이브 구축					
나) 혁신적 예술시장 환경 조성						
	청년 예술인의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지원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활성화 지원					
	우수 공연작품 영상·출판·음원 제작·유통 지원					

추진과제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술분야 매개인력 지원 확충					
다) 교류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확대						
	전략적 교류 확대 및 국내 아트마켓·축제 재정립					
	비엔날레·아트페어 평가 등을 통한 국내외 교류 활성화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 확대					
8. 예술의 미래가치 확장						
가) 과학기술 융합을 통한 예술의 가치 확장						
	예술-기술 '융합랩' 운영					
	첨단 융합공연 활성화 지원					
	예술분야 R&D 지원					
나) 실험과 도전의 새로운 예술 공간 조성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서계동 복합 문화예술시설 건립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파주 무대공연예술종합아트센터 건립					
다) 예술을 통한 문화교류와 협력 확대						
	문화예술교육 ODA 확대					
	한국예술종합학교 AMA 장학 사업 확대					
	남북예술교류 활성화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조직·인사·법제 등 수반과제는 관계 부처 협의과정에서 조정 변경될 수 있음